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2015. 12.

정 재 호 · 신 상 화

서 언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의 FTA를 체결하고 발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결한 다수의 FTA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주도하면서, FTA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 문제와 이러한 원산지가 변경 없이 수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접운송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FTA는 FTA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만 상호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기에 FTA 체결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적용이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와 직접운송원칙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원산지 기준의 복잡성이 FTA 활용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3년 동안의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TA 특혜세율과 일반세율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FTA 제도를 더 활용하며,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미 FTA 자료를 바탕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 원산지 기준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본 연구원의 정재호 선임연구위원과 신상화 부연구위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와 명지대학교 조미진 교수,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논평자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 참석해 많은 지적을 해주신 여러 참

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본 연구원의 안승연 연구원, 장정순 주임연구
행정원, 그리고 원고교정을 맡아 준 출판담당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
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5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 형 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양자 통상정책보다는 WTO에 기반을 둔 다자 통상정책에 무게를 두고 다른 국가들이 1990년대 말부터 FTA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정책을 통해 미국, EU, 중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라는 큰 장터가 마련되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앞서 논의되었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FTA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될 수는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 중에서 FTA 제도를 이행하는 데 가장 핵심 항목인 원산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FTA는 해당 FTA 계약국에 한정해서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기에 FTA 계약국인지를 확인하는 원산지 적용이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원산지 자체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접은송원칙도 함께 논의하였다.

FTA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문제는 수출입업체, 세관당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FTA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함께 FTA 체결국 사이에 원산지 검증 요구 또

한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원산지 검증 요구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 수치를 제시한 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건수는 2008년 23건에서 2014년 2,8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EU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검증이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2008년 293건에서 2014년 3,323건으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원산지 기준도 복잡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증가하는 것도 분명 수출입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3년 동안의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한·미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FTA 특혜세율과 일반세율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FTA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 원산지 엄격성 잣대를 대보면, 예상한 대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자료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원산지 규정 엄격성과 FTA 활용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한·미 FTA 자료를 바탕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 원산지 기준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또한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까지 강화된다면 FTA 활용률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원산지 관련 규정이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 산재되어 있다. 정재호 외(2015)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일본, EU, 호주 등의 국가는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등의 개편 필요성이 논

의되었다. 「관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추가해서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도 복잡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수출입업체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과 함께 원산지 및 직접운송원칙 적용 관련 법적 분쟁 사례들도 함께 분석하였다. 원산지 관련 분쟁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규정이 실제 FTA 활용에 있어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밝혀냈다. 우선,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현행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세당국과 수출입업자의 FTA 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분쟁들은 충분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원산지 검증이 요청되는 사유 중에서 서류 등 형식적인 요건이 전체 검증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과 같은 실질적인 요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8% 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수출검증 결과 실질적으로 원산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약 37%이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 유형의 절반인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원산지 위반 유형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형식적·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의 실질적인 요건보다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 검증 기준 자체가 분쟁을 촉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인 FTA에서는 수출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피해가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또는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된 분쟁도 있다. 원산지 회신 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스위스 금과 사례에서와 같이 상대국에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원산지 검증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기한을 회신 기한에서 제외하는 식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대국 관세당국의 기한 내 미답변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현행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불가피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외 적용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행 원산지 검증 규정의 복잡성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낳고 있으며 이는 FTA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단기적으로는 검증 절차에 대한 유연한 해석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모순성이 존재하는 FTA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직접운송과 관련된 분쟁은 원산지 문제보다는 좀 덜 복잡한 것으로 보였다. 원산지 관련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서류 미비 등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우선 눈에 띄었다. 세관 통제 아래 물품이 보관되지 않았거나, 최종 목적지를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자와 수입자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서류미비 등이 있었다. 미국의 사례들에서는 미국 세관이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직접운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기본적인 형식요건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와 같이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서 출발지를 정하지 않고 출항한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적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미국처럼 직접운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지만,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들의 물류비 절감 등이 그 이유이기에 현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관세특례법」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고 「관세법」 내용을 수정하면서 FTA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들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FTA라는 새로운 제도가 운용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1년 이내에 FTA 특혜세율의 사후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FTA 신청 오류로 다시 세액을 수정/경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 기간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소급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신청을 제한하거나, 소급 발급일부터 협정관세적용 신청시점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벌칙 관련해서, 고의인 경우와 과실인 경우에 대해 차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세건설장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완성품 또는 부분품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여 보세건설장에서도 보세공장처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FTA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 분석 등 FTA를 통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혜택이 발생할 지를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상대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없는 노

력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다. 이제 다수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FTA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추정 당시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측한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시사점들을 통해 FTA 체결 당시 기대했던 혜택 이상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또한 향후에도 FTA제도를 실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제도 정비 및 연구가 필요하다.

목 차

I. 서 론	17
II. FTA 제도 이행의 특징 및 문제점	22
1. 우리나라 FTA 현황	22
가. 발효 현황	22
나. 타결 및 협상진행 현황	24
2. FTA 적용 요건	24
가. 원산지 기준	26
나. 직접운송원칙	29
3. FTA 이행에 따른 문제점	30
가.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30
나. 직접운송원칙 적용에 따른 문제점	32
III. 원산지 규정과 FTA 활용	35
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한·미 FTA의 활용	35
가.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	36
나. 분석자료	53
다. 추정식	53
라. 추정결과	56
2.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와 FTA 활용	60
가.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61
나. 미국과 EU의 원산지 검증제도 운용 현황	65
다. 원산지 검증 현황	69
라. 원산지 검증 관련 분쟁 사례	73

마. 원산지 검증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78
3.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80
가. 원산지 규정 개념	80
나.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	81
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의 시사점	85
IV.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제도	87
1. 직접운송원칙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	87
가. 국제적인 논의	87
나. 국제적 제도 및 특징	89
2. 우리나라와 주요국 관련 제도	95
가. 우리나라 제도	95
나. 주요국 제도	100
다. 주요국 특징	105
3. 직접운송원칙 적용 관련 분쟁 사례	106
가. 우리나라 관련 분쟁 사례	106
나. 미국에서의 관련 분쟁 사례	110
4. 환적화물 통관에 대한 논의	119
가. 우리나라 환적화물 제도 현황	119
나. 환적과 직접운송원칙의 조화	121
5. 기타 「FTA 관세특례법」 관련 개선사항	122
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협정관세 적용신청	122
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123
다.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벌칙	124
라.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FTA 적용 확대	125

V. 요약 및 결론 127

참고문헌 133

표목차

〈표 II-1〉 FTA 체결현황 23

〈표 II-2〉 FTA 타결현황 24

〈표 II-3〉 원산지규정의 기능 26

〈표 III-1〉 주요 세번변경 기준 사례(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38

〈표 III-2〉 자동차 산업의 중간재 투입 비중 및 수입액 비중 40

〈표 III-3〉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42

〈표 III-4〉 협정별 최소기준 비교 44

〈표 III-5〉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 47

〈표 III-6〉 한·미 FTA 원산지 기준 48

〈표 III-7〉 FTA별 원산지 기준의 분포 50

〈표 III-8〉 한·미 FTA 엄격성 지수 52

〈표 III-9〉 추정결과(우리나라) 56

〈표 III-10〉 주요변수의 통계량(우리나라) 57

〈표 III-11〉 추정결과(미국) 58

〈표 III-12〉 주요변수의 통계량(미국) 59

〈표 III-13〉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63

〈표 III-14〉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법 64

〈표 III-15〉 미국 주요 무역협정별 검증방식 66

〈표 III-16〉 한·미 FTA 현장 검증팀의 검증절차 67

〈표 III-17〉 EU 주요 무역협정 원산지 검증 형태 68

〈표 III-18〉 원산지 검증 요청 70

〈표 III-19〉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82

〈표 III-20〉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 83

〈표 III-21〉 통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84
〈표 IV-1〉 통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88
〈표 IV-2〉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유럽 규정	92
〈표 IV-3〉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NAFTA 규정	93
〈표 IV-4〉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ASEAN 규정	94
〈표 IV-5〉 「FTA 관세특례법」 제9조	96
〈표 IV-6〉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96
〈표 IV-7〉 FTA 특레고시	97
〈표 IV-8〉 우리나라 FTA 협정별 비교	98
〈표 IV-9〉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는 FTA 비교	99
〈표 IV-10〉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는 FTA 비교	100
〈표 IV-11〉 미국의 직접운송원칙	101
〈표 IV-12〉 미국의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102
〈표 IV-13〉 EU의 직접운송원칙	103
〈표 IV-14〉 중국의 직접운송원칙	104
〈표 IV-15〉 일본의 직접운송원칙	105
〈표 IV-16〉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120
〈표 IV-17〉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비중)	120
〈표 IV-18〉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123
〈표 IV-19〉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124
〈표 IV-20〉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125

그림목차

[그림 Ⅲ-1] 엄격성 지수 분포	55
[그림 Ⅲ-2] 한·미 FTA 서면검증 절차 자료	67
[그림 Ⅲ-3]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절차	69
[그림 Ⅲ-4] 산업별 수출검증 비중	70
[그림 Ⅲ-5] 협정별 수출검증 현황	71
[그림 Ⅲ-6] 수출검증 요청 사유 비중	72
[그림 Ⅲ-7] 수출검증 위반 유형 비중	73
[그림 Ⅳ-1] 직접운송의 경우	91

I. 서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건의 FTA가 발효되었다.¹⁾ 이 중에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국가들과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FTA 추진에 적극적이다. FTA 체결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다수 국가 간의 협상보다는 소수 국가 간의 관세인하 협상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상대국과 FTA 협상을 논의하는 동안에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FTA 협정 문안이 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FTA가 체결되어 발효된 이후에는 발효된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EU, 미국, 그리고 중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체결되어 우리나라 교역의 절반 정도가 FTA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발효된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 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자동적으로 FTA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FTA는 소수의 국가들 사이에 주어진

1) 2015년 11월 1일 기준.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베트남 등과의 FTA도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서 해당 물품이 제조되었다는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이 체결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면서 원래의 원산지 증명이 바뀌지 않았다는 직접운송원칙 준수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FTA라는 새로운 제도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산지 증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운송원칙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FTA 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들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주제가 다양하지만,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는 FTA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중 가장 중요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인 원산지와 직접운송원칙 적용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FTA라는 새로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와 직접운송원칙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다.

FTA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로는 우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는 바, 이런 기존 연구들에 비해 FTA 제도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로는 김한성 외(2008), 김한성·조미진(2010), 김영귀 외(2013), 장근호(2013), 정재완(2012), 최승환(2014), 한상현(2013) 등이 있다. 김한성 외(2008)는 Estevadeordal(2000)의 엄격성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FTA에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한·칠레, 한·ASEAN, 한·싱가포르, 한·EFTA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맺은 FTA에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귀 외(2013)에서는 미국과 EU의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FTA 상대국간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산지검증 대비 다양한 국내지원 제도를 기관별로 특화하고 대상별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근호(2013)는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일관성있는 세관 운영안을 제안 하였다. 한상현(2013)에서는 한·EU FTA에서 발생한 직접운송 관련 심사청구사례를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심사청구사례의 사실관계,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 결정내용을 분석하여 실무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승환(2014)에서는 소고기 수입확대 여부, 약값 산정, 수입차 안전기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등과 관련된 한·미 FTA 규정을 논의하고 이들 주제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한편 기존 연구와 달리 다양한 분쟁 사례와 최신의 원산지 검증 자료 분석, 그리고 한·미 FTA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함께 시도한다. 기존 연구 중에서 한·미 FTA처럼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없었기에 이에 대한 기여도 있다.

FTA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문제는 수출입업체, 세관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기준으로 FTA 체결국 사이에 원산지 검증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외국 세관행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 세관이 검사하고 통관하였지만, FTA 체결 이후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검증 등은 상대국 세관의 협조 없이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대국 세관행정이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사실 여부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가 늦어질 경우 수입물품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출입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한·미 FTA가 어느 정도 자리

를 잡아가는 과정이기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3년 동안의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학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수출입 업체가 FTA를 활용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자료를 바탕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 원산지 기준이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 원산지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산지 관련 분쟁 사례와 함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내법의 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직접운송 규정 비교,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직접운송 규정과 운영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직접운송과 연관성이 있는 환적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적화물의 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고 「관세법」 내용을 수정하면서 FTA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들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FTA라는 새로운 제도가 운용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도 대해서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기술한다. 제Ⅱ장에서는 FTA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FTA는 특혜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협정국에 대해서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품이 FTA 협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원산지 규정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FTA 관련 제도들 중에서 원산지 규정과 FTA 활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원산지 기준 적용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특히 한

미 FTA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이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원산지 검증 절차와 원산지 검증에 따른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 요청과 그 원산지 검증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추가로 원산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원산지 관련 법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원산지 문제와 함께 FTA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직접 운송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FTA와 연관된 직접운송원칙을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FTA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직접운송과 연관되어 발생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분쟁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 밖에 「FTA 관세특례법」 등에서 제시된 FTA 제도들 중에서 FTA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Ⅱ. FTA 제도 이행의 특징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발효된 11개의 FTA를 통해 총 49개 국가와 특혜관세 적용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초의 FTA는 한·칠레 FTA로 1999년 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4월 발효되었으며, 가장 최근 발효된 FTA는 한·캐나다 FTA로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2015년 1월 발효되었다. 이 밖에도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그리고 베트남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를 비롯하여 3개의 FTA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²⁾

이처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FTA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으나, FTA 협상을 실제 무역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 장에서는 FTA 적용 국가와의 무역 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현황 및 FTA 적용을 위한 세부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 FTA 현황

가. 발효 현황

2015년 4월 현재 발효된 FTA는 총 11개이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그리고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다.³⁾

발효된 순서대로 11개의 FTA 협정을 정리해보면, 2004년에 1개, 2006년에 2개, 2009년에 1개, 2010년에 1개, 2011년에 2개, 2012년에 1개, 2013년에 1

2) 자료: FTA 강국, KOREA, www.fta.go.kr (접속일: 2015.09.26)

3) 자료: FTA 강국, KOREA, www.fta.go.kr (접속일: 2015.09.26)

개, 2014년에 1개, 2015년에 1개 등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체결 대상국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총 50여 개 국가 중 OECD 가입국은 29개국, 개발도상국은 16개국⁴⁾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구분하여 볼 때 북아메리카 2개국, 남아메리카 2개국, 중동 1개국, 유럽 32개국, 아시아 11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다.

〈표 II-1〉 FTA 체결현황

분류	협상 개시	서명	발효	상대국
한·칠레 FTA	1999년 12월	2003년 2월	2004년 4월	칠레
한·싱가포르 FTA	2004년 1월	2005년 8월	2006년 3월	싱가포르
한·EFTA FTA	2005년 1월	2005년 12월	2006년 9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ASEAN FTA	2005년 2월	2006년 8월 (상품무역) 2007년 11월 (서비스) 2009년 6월 (투자협정)	2009년 9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한·인도 CEPA	2006년 3월	2009년 8월	2010년 1월	인도
한·EU FTA	2007년 5월	2010년 10월	2011년 7월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한·페루 FTA	2009년 3월	2011년 3월	2011년 8월	페루
한·미 FTA	2006년 6월	2007년 6월	2012년 3월	미국
한·터키 FTA	2010년 4월	2012년 8월	2013년 5월	터키
한·호주 FTA	2009년 5월	2014년 4월	2014년 12월	호주
한·캐나다 FTA	2005년 7월	2014년 9월	2015년 1월	캐나다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현황,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situation/FTA_ov_list20140320.pdf, (접속일: 2015.10.01)

4) 개발도상국은 IMF의 기준에 따라 분류함. IMF, "Country Composition of WEO Groups,"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groups.htm#oem>, (접속일: 2015. 10. 1.)

나. 타결 및 협상진행 현황

2015년 4월 현재,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발효 전인 FTA는 총 5개이다. 상대국은, 2014년 교역대상국 1위인 중국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4위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는 모두 2015년 초에 서명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체결 및 타결이 된 FTA 이외에도 진행 중인 협상이 2개인데,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가 그것이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 중심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RCEP 참여국으로는 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다자간 협상 형태를 띠고 있다.

〈표 II-2〉 FTA 타결현황

분류	협상 개시	서명	상대국
콜롬비아	2009년 12월	2013년 2월	콜롬비아
터키(서비스·투자협정)	2013년 8월	2015년 2월	터키
중국	2012년 5월	2015년 6월	중국
뉴질랜드	2009년 6월	2015년 3월	뉴질랜드
베트남	2012년 8월	2015년 5월	베트남

자료: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현황.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situation/FTA_ov_list20140320.pdf. (접속일: 2015.10.01)

2. FTA 적용 요건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FTA 협상을 확대시켜 왔으며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역 환경하에 놓이게 되었다. FTA 체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입 제품별로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다는 점이다. 동일한 전자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FTA 협상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새로운 무역 형태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무역 환경하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FTA 협정을 통해 특혜관세의 혜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새로운 제약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⁵⁾ 우선, 품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혜관세는 각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합의된 특정 품목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특혜관세율 역시 각 협정별로 상이하고 동일한 상대국과의 협정이라 할지라도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특혜관세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 특혜관세율이 얼마인지는 특정 품목의 생산지, 생산연도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FTA 협정은 협정 내의 국가들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기에, 통관되는 물품이 협정 대상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일정기간 보관·관리하는 책임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직접운송원칙에 따르면 하나의 FTA 협정상 두 국가 간의 무역이라 할지라도 무역품의 운송이 제3국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품목기준의 경우 그 정의에 따라 해당 기준의 적용이 명확하다 할 수 있으나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의 경우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보다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5) 특혜관세 적용요건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 포탈의 내용을 이해하여 재작성하였음.

가. 원산지 기준

앞서 언급한 FTA 적용을 위한 세 가지 기준 중 원산지 적용 기준은 비단 FTA하에서 새롭게 도입된 원칙은 아니다. 채형복(2011, p. 16)에 따르면 이 규정이 국제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883년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서이다. 이후 GATT, 교토협약, 그리고 WTO 원산지규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국제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은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을 국가라는 단위의 지역과 연결짓는 것이다.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물품이 생산된 국가가 다를 경우 무역 거래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다.

〈표 II-3〉에서 보듯이 원산지 규정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특히 무역장벽 기능은 당사자 간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반면 그 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FTA와 같은 형태의 무역 협정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FTA 협정 체결국인 두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FTA의 골자이기 때문에, 두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의 여러 쟁점 중 한 가지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을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⁶⁾

〈표 II-3〉 원산지규정의 기능

구 분	내 용
생산자 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의 전통적 기능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성가와 신용의 차별화에 따라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과 같은 일종의 무형의 권리로 인정됨 ■ 거래 시 타 지역 또는 타인의 생산품과 구별하여 양질의 물품으로 신용을 인정받아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구매자로부터 우선 선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6) 고준성(2007), pp. 21~44.

〈표 11-3〉의 계속

구 분	내 용
생산자 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의 국제경쟁력 우위로 수출의 증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내의 특산품 생산과 같이 국가가 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을 장려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적인 예(지리적 표시제로 발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인삼 및 홍삼제품과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등을 들 수 있음
소비자 보호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질서에 오인, 혼동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됨 ■ 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로부터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오인, 혼동되지 않게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여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함 ■ 일반적으로 생산기술이 우수한 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과 자국 생산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보건위생 및 자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자연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보호를 위하여 특정 지역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특정국가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은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의 보호기능을 수행함 ■ 최근 수입자유화로 동식물과 농수축산품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이들 수입품으로부터 병충해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보건과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을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산업보호 및 무역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하에서 자국의 산업발전과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 저가 수입물품에 대해 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수량을 할당하여 수입을 규제할 수 있으며, 무역통계를 원산지별로 작성하여 무역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 - 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간 FTA와 같이 호혜적으로 또는 GSP와 같이 일방적으로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 양허 등 특혜조치를 취하여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함. 이와 같은 제도를 위한 원산지규정은 협정국 간 무역, 투자를 촉진하거나, 우회 수입방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함
무역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켜 국제무역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어 전형적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게 됨 ■ 원산지규정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ATT 제9조와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은 각국이 원산지 표시제도를 설정 운영함에 있어서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최근 세계 각국은 양자간 협약으로 FTA를 체결하여 관세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 규정을 협정당사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수출입업체에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새로운 무역장벽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 최홍석·이영달(2011), pp. 9~10.

원산지 규정의 원칙은 크게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상품의 원산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기준이 있으며,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또한 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세관 당국의 확인절차 또한 원산지 규정의 원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⁷⁾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적용국가의 국내법과 FTA 협정 상대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이 FTA 관련 국가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최홍석·이영달(2011, pp. 52~54)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은 크게 미주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NAFTA 모델과 유럽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PANEURO 모델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의 경우 고유한 원산지규정 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협정 대상국에 따라 두 모델 모두 사용되고 있다.

NAFTA 모델과 PANEURO 모델의 차이점은 근본적인 결정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아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의 기준을 협정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하나의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며, 세번변경 기준은 주요 생산요소들이 생산국으로 수입된 뒤 가공될 경우 세번변경에 따라 이를 원산지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부가가치 기준은 생산된 최종재와 투입된 수입 중간재 사이의 부가가치 비율을 구하여 이를 원산지 인정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특정공정기준의 경우 매우 특수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해당 제품 생산의 원산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여러 부수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 기준은 이러한 여러 기준이 조합됨으로써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다.

7) 채형복(2011), p. 12.

나. 직접운송원칙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또 다른 요건으로 직접운송원칙을 들 수 있다. 정재호 외(2013)에 따르면 직접운송원칙은 ‘특혜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가 부인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다. 보다 간단히 말하여 FTA 체결 양국간의 특혜관세 대상 물품의 운송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3국을 거쳐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특혜관세의 배타적 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에서 제3국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으로 바로 수송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최종재의 추가적인 가공을 위해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거쳐 이동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예에서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 중국 업체가 한·미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미국으로의 수출이 촉진되게 되는, FTA 협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제3국을 거쳐 운송되었음에도 환적을 위한 일시적인 운송상의 과정일 경우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 한·EU FTA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상에 명시적으로 기입하고 있으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 또한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단서 문구를 함께 두고 있다.⁸⁾

직접운송원칙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한·EU FTA와는 달리 한·미 FTA의 경우 명시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미 FTA 협정문 제6.13조 ‘통과 및 환적’에 대한 조항에서 “그

8) 한·EU FTA 협정문 제13조 직접운송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혹은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FTA 이행에 따른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기준들은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의 산업 분류와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는 양자간 협정의 특징 중 하나로, 매 FTA 협상마다 대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율 및 해당 품목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이 어떤 국가에서 왔으며 어떠한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부담을 낳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은 양자간 협정을 다양한 국가군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일부 조건들의 경우 실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거나 국가 간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어 이를 행정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장에서는 특혜가 적용되는 이러한 FTA 이행에 따른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함께 간단하게 직접운송원칙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가장 큰 조건인 원산지 기준 원칙은 해당 품목이 FTA 협정 대상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특정 제품이 FTA 협정 대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일 경우에 한해서만 특혜관세를 인정

하기 때문에 원산지 인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은 각 FTA 협정마다 자세히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원산지 기준은 배타성을 지니고 있는 FTA 협정 성립에 필수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무역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한 가지 제품을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경우로 자리잡고 있다. 가령, 중국 폭스콘에서 생산되는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 DRAM 블루투스 모듈,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등의 각 부품마다 원산지가 상이하다. 일부 부품은 미국에서 조달하나, 다수의 부품들을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수입하여 하나의 완성된 아이폰을 생산한다.⁹⁾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된 아이폰을 과연 중국산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원산지 규정인 것이다.

하지만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닐 수 있다.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한 다양한 중간재로 하나의 완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원산지 규정을 점검한 뒤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절차적 비용 또한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FTA 도입이 각 생산업체들에게 하나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업체들이 FTA를 특혜관세라는 혜택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이라는 비용 또한 함께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크지 않다면 혹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기업들이 FTA가 아닌 일반 통관을 통해 무역활동을 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FTA 활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인식 즉, 원산지 규정이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원산지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해 해당 물품의 FTA 활용률이 낮아질 수

9) The Economist(2011), "Slicing an Apple," August 10,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8/apple-and-samsungs-symbiotic-relationship>. (접속일: 2015.08.22)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켰는지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여 FTA 활용률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FTA 협정 당사국들 간에 이미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은 FTA 협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양국 과세당국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 가령,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은 수출입 업자들로 하여금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보다 높은 FTA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한 FTA 활용상 문제점들에 대한 사례와 분석은 제Ⅲ장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나. 직접운송원칙 적용에 따른 문제점

전통적으로 수출입 물류흐름은 생산지(국가)에서 직접 소비지(국가)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유럽에 수출한다면, 우리나라 항구를 통해 유럽의 항구로 완성품인 자동차가 운송되어 해당 국가의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 물류흐름은 생산지(국가)에서 직접 소비지(국가)로 운송되기보다는 생산지(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이 소비가 예상되는 지역 혹은 그 인근으로 운송된 이후, 그 곳에서 소비지(국가)로 운송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유럽 국가들은 주문과 상관없이 유럽산 자동차를 생산해서 싱가포르, 홍콩 등의 물류기지로 자동차를 운송하고, 그 이후에 또는 운송도중에 우리나라 또는 일본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차를 운송해 주는 것이다. 이는 국가별 수요량을 예측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빠르게 제품(자동차)을 배송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운송전략이 FTA 직접운송원칙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FTA 직접운송원칙에서는, A국가에서 주문이 발생하면 이를 수출국인 B국가에서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B국가에서 A국가로 직접

운송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주문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B국가가 아닌 제3의 국가로 해당 물품이 출고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직접운송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A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가 되고, 따라서 A국가와 맺은 FTA 협정은 적용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일부 물품만이 또는 이미 제3국에 있던 물품과 합쳐져서 A국가로 수출이 된다면, 더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FTA 협정별로 탁송화물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며, 분리를 인정하는 협정과 그렇지 않은 협정이 존재한다. 이는 탁송화물 분리를 통해 원산지 세탁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관 당국의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탁송화물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진보하는 물류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때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의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3국에서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제3국의 세관 통제 아래 있었음을 확인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즉,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선된 물류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 곧 원산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직접운송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다. ‘FTA 특례고시’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에서는 “체약상대국이 내륙지 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위스는 자국에 항구가 없기 때문에 인접국, 예를 들어 독일 항구에서 우리나라로 화물이 운송되더라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사는 스위스에 있고 스위스에 있는 본사가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화물은 독일 생산 공장에서 출고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한·EFTA FTA협정을 맺고 있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와 한·EU FTA협정을 체결해서 한·EU FTA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섬유류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많은 업체들이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된 사례들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이러한 섬유류를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APTA)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APTA도 특혜세율의 일종이기에 이러한 특혜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근래 들어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면서 중국과 홍콩 사이에 세관 통제 아래 직접 운송되었다는 육상운송 서류 미비로 특혜세율을 못 받거나, 또는 이미 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다시 관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¹⁰⁾. 중국에서 섬유류를 수입하면서 홍콩을 경유하는 이유는 홍콩과 우리나라 사이의 선박 운항 편수가 많고 물류비용도 중국 항구를 통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물품이 홍콩을 경유할 경우에는 통과선하증권 등의 직접운송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나 대개 홍콩에서는 중계무역 형태로 거래되어 중국 내 내륙운송에서는 이러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세관 입장에서는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회수출을 통해 불법적으로 특혜세율을 받아 해당국 입장에서는 세수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서 업체들의 현실적인 이유와 세관 당국의 불법적인 특혜세율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운송원칙이 충돌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10) 한 예로 2013년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가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한 경우, APTA 관세 혜택을 요청하였으나, 중국-홍콩간 직접운송 증거 불충분으로 적용 배제된 경우가 있다. 관세청 법령정보: 적부심사 제2013-59호, <http://www.customs.go.kr/kcshome/law/precedent/PrecedentUserDetail.do?layoutMenuNo=20225&class1=1¤tPageNo=1&searchCondition=evtNm&searchKeyword=APTA&startDate1=&endDate1=&startDate2=&endDate2=&deccNo=617> (접속일: 2015.10.26)

Ⅲ. 원산지 규정과 FTA 활용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원산지 기준 원칙은 해당 품목이 FTA 협정 대상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해당 품목의 원산지가 FTA 협정 대상국인지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특혜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들은 매우 복잡한 원산지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FTA 활용을 위한 주요 조건 중 하나인 원산지 규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의 적용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는 수출입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며 이로 인해 FTA 활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이슈로는 크게 원산지 규정 자체가 얼마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지와 그러한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의 문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한·미 FTA의 활용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품목일수록 FTA 활용이 낮아질 것이라 직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실제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면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우선,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찾아내서 특정 FTA의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을 지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원산지 규정이 HS 6단위에서 주로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5,000여 개 이상의 품목들에 대해 하나하나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정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실제 품목별 수입액 자료가 FTA 적용/비적용으로 구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무역 데이터는 많은 국가에서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특정 품목의 무역 데이터를 상대국과 맺은 FTA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로 수입된 특정 국가와의 무역 자료는 국내 기관들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접근할 수 있으나 우리가 무역 상대국으로 수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FTA 적용 여부를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맺고 있는 다양한 FTA들 중 한·미 FTA의 사례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미 FTA의 경우 협정 발효 후 2012년부터 3년간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

1) 원산지 결정 기준

일반적으로 각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원산지 인정기준은 상이하나 다음과 같이 크게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가) 완전생산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보아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하나의 완제품이 한 국가 내에서 온전히 생산된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칙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규정’에 따르면 완전생산기준은 “수출물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 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경우로서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라 정의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이다.

제조업 물품들의 경우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중간재들이 투입되므로 이 과정에서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가령, 중국 폭스콘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이폰의 경우 액정,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양한 중간재들이 투입되게 되고, 이에 따라 완전생산기준만으로 한 제품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번(HS코드)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실질변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나) 실질변형기준 - 세번변경 기준

실질변형기준 중 하나는 세번(HS코드)변경 기준이다. 세번변경 기준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라 정의되고 있다.¹¹⁾

세번(HS cod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정해진 동일한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국제 물품번호로서 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다. 첫 두 자리의 숫자는 해당 제품의 류(Chapter)를, 첫 네 자리의 숫자는 호(Heading)를, 총 여섯 자리 숫자 전체는 소호(Subheading)를 의미한다. 가령, 건축용 벽돌의 경우 HS 6904.10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69류인 ‘도자제품’, 6904호인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바닥 깔개용 블록, 서포트 타일, 필터타일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된다.

세번변경 기준은 이와 같은 세번이 변경될 때 이를 원산지 변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는(한·미 FTA 기준) 열간압연평판(HS7208)과 냉간압연평판(HS7209)을 예로 들자면, 다른 4단위 세번에서 생산된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였을 경우 중간재들의 실제 원산지와 상관없이 생산된 제품을 국내산 제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11) 산업통상자원부(2014),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이러한 기준은 세번의 어떤 단위까지의 변경을 원산지 변경의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2단위, 4단위, 그리고 6단위 세번변경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품목의 원산지 인정에 있어 6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할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보다 관대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할 경우 중간재와 최종재의 세번이 2단위라는 높은 수준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간재와 최종재 간의 원산지 변경 인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세번변경 기준을 통한 원산지 판정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FTA 협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적용요건은 각각 상이하기에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수출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다. <표 Ⅲ-1>은 세번변경 원산지 기준의 예를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기준이 겹치는 품목들이 있기는 하나,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 간에 세번변경 기준이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 주요 세번변경 기준 사례(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

구분	HS별 주요 품목	
2단위	한·칠레	1~10류(농수산물), 12~14류(농수산가공품), 25~26류(광물), 46류(조물제품), 49류(인쇄물), 54류(인조필라멘트), 56~58류(특수직물), 60류(편물), 69류(도자제품), 82류(비금속제품) 등 25개 류에 속한 모든 품목과 연료, 고무제품, 가죽제품, 섬유사, 귀금속, 비금속, 시계완제품, 대부분의 침구류 등
	한·싱가포르	1~14류(동식물성 생산품), 천연섬유 재료와 면사, 69류(도자제품), 82류 및 완성품 시계(9101~9107) 등
4단위	한·칠레	21류(조제식품), 33류(정유, 화장품), 34류(비누, 왁스), 35류(단백질계 물질), 37류(사진영화재료), 44류(목재), 45류(코르크), 47~48류(종이), 66류(산류, 지팡이), 84류 기계류의 부분품류, 86류(궤도차량), 88류(항공기), 97류(예술품, 골동품) 등 14개 류에 속한 모든 품목과 광물성 연료, 의약품, 화학제품, 직물, 유리제품, 귀금속제품, 비금속제품 등
	한·싱가포르	22류(주류), 24류(제조담배), 25~27류(광물성 생산물), 28~38류(화학공업생산품), 39~40류(플라스틱과 고무), 41~43류(가죽·모피), 44~49류(목제품 등) 및 직물류, 56~58류(특수직물), 60류(편물), 64~68류, 70류(유리제품), 72~81류 및 84류 기계류의 부분품, 96류(잡품), 97류(예술품, 골동품) 등

〈표 III-1〉의 계속

구분	HS별 주요 품목	
6단위	한·칠레	합성유기착색제, 불꽃제품, 생양, 지방산, 조제점결제, 철강체인, 연·아연괴, 비금속의 기타 제품, 쌍안경, 망원경 등으로서 2단위 또는 4단위 기준에 비하여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적으로 적용
	한·싱가포르	수력터빈(8410.12~8410.13), 수확기 등 농업용 기계(8433.11 등), 계산기(8470), 컴퓨터(8471), 팩시밀리(8517.20), 교환기(8517.30), 다이오드(8541), IC(8542) 및 맛사지용 기기(9019) 등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포탈, 「원산지 규정」,
<http://www.custracom/content.do?method=getContent&gcd=S02&siteCmscd=CM0002&topCmscd=CM0013&cmscd=CM0318&pnum=1&cnum=4>, (접속일: 2015.08.22)

세번변경 기준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품목번호를 통해 원산지를 판정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최근의 무역 추세를 보면 그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다수의 제품들이 동일한 4단위 세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4단위 세번변경 기준만으로 실질적인 원산지 변경을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실질변형기준 - 부가가치 기준

앞서 언급한 세번변경 기준은 그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무역 형태를 반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무역은 본질적으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있는 상품으로의 집중화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무역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상품 생산의 집중화와 전문화 또한 촉진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종 산업 내에서의 무역 또한 국제 무역의 증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종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은 하나의 산업분류에 속하는 상품들이 두 국가 사이에서 수출입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가령,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들이 몇 개의 산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산업연관표(중분류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총 투입액 중 약 32%가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된 여타의 중간재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중 약 10%가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세번변경 기준만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게 될 경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중간재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제품의 실질적인 원산지 판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표 III-2〉 자동차 산업의 중간재 투입 비중 및 수입액 비중

(단위: 백만원, %)

산업중분류(A)	투입금액(B)	비율(B/C)	수입액(D)	중간재 중 수입액 비중(D/B)
플라스틱제품	8,712,103	0.05	507,260	0.058
고무제품	3,198,325	0.02	654,897	0.205
철강1차제품	3,226,358	0.02	268,687	0.083
철강가공제품	4,227,215	0.02	1,313,302	0.311
금속제품	9,321,088	0.05	1,110,995	0.119
전기장비	5,421,851	0.03	1,389,516	0.256
자동차	56,454,247	0.32	5,824,878	0.103
총투입액(C)	176,635,122			

자료: 2012년 산업연관표 중분류 총거래표 및 수입거래표(ecos.bok.or.kr), 저자 작성

이러한 한계로 인해 세번변경 기준과 함께 병행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부가가치 기준이다. 부가가치 기준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치 중 그 국가에서의 생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견 객관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느껴지는 이 기준은 생산된 물품 중 부가가치의 비중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따라 세분화된다. 또한 부가가치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재의 가격, 제조원가, 공장도 가격, 국내운송비 가격 등 여러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다른 두 기준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FTA 협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역내

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s)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비원산지재료의 비율(Import Contents)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NAFTA 방식의 경우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PANEURO 방식의 경우 비원산지재료비율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¹²⁾ 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한·미 FTA,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FTA 등은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등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EFTA 및 한·EU FTA 등은 비원산지재료 비율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역내부가가치 기준은 크게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제법과 직접법은 상품가격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순원가법은 순원가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비원산지재료비율 방식은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¹³⁾ 구체적인 산출 공식은 <표 Ⅲ-3>에 정리하였다.

12) 최홍석·이영달(2011), p. 131.

13) 최홍석·이영달(2011), p. 133.

〈표 Ⅲ-3〉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산정기준		산출공식
역내부가가치 RVC (Regional Value Contents)	공제법 (Build-down Method)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상품가격(AV)}^*} \times 100$
	직접법 또는 집적법(Build-up Method)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비(VOM)}^*}{\text{상품가격(AV)}^*} \times 100$
	순원가법(Net Cost Method)	$\text{부가가치비율(RVC)}^*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text{순원가(NC)}^*} \times 100$
비원산지재료의 비율 MC(Import Contents)		$\text{부가가치비율(MC)}^* = \frac{\text{비원산지재료(VNM)}^*}{\text{공장도가격(EXW)}^*} \times 100$

주: RVC: %로 표시된 부가가치비율
 AV: FOB 가격으로 조정된 상품의 거래가격
 VNM: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OM: 생산자가 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
 NC(Net Cost): 순원가는 총비용에서 판촉·마케팅·A/S·로열티·운송·포장 관련 비용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차비용을 뺀 가격
 MC: %로 표시된 비원산지재료비 비율
 EXW(EX-Work Price): 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환급되는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
 자료: 최홍석·이영달(2011), pp. 132~133.

부가가치 기준은 〈표 Ⅲ-3〉에 나와 있는 산식들의 분자와 분모 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적용의 편이성이 결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비용들이 각 식들의 분자/분모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니며, 이를 규정하는 규칙 또한 하나하나의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수입업자가 다수의 국가로부터 동일한 상품을 수입할 때 이 상품의 원산지를 적용하는 기준이 거래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각의 FTA는 이러한 계산 방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 규정은 크게 상품가격과 재료가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 기준 중 공제법과 직접법은 상품가격의 경우 관세 가격에서 운임, 보험료 등을 차감한 FOB 가격을 상품가격으로 인지한다. 순

원가법의 경우 상품의 총원가에서 마케팅, 로열티, A/S, 운송, 포장 등의 비용을 제외한 순원가(Net Cost)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원산지재료비율 방식의 경우 공장도가격을 부가가치비율 산출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하여 도출되게 된다.

재료비의 계산 방법 또한 각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공제법과 순원가 계산방식, 그리고 비원산지재료비율 방식의 경우 비원산지재료의 재료비를 산출해야만 각각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역내부가가치 기준 중 직접법의 경우 원산지재료비를 알아야만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때문에 중간재의 성격에 따라 재료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운임, 보험료, 관세, 내국세 등의 공제와 관련하여서도 추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라)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은 한 상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의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특성을 생산, 가공해낸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의 구분이 명확한 특정 산업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가령 석유, 화학, 섬유, 의류 등의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마) 기타 보충 기준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기준은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여러 FTA 규정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 네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보충 기준들을 통해 원산지 선정에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례 기준에는 최소허용기준, 누적기준, 중간재, 대체가능상품, 간접재료 및 세트 상품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소허용기준은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된 재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재료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라도 그 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라 정의되고 있다.¹⁴⁾ 이 제도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인 품목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품목별 최소 허용기준은 물품가격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산정되게 된다.

가령,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에 있어 총 4개의 투입요소가 있으며, 이 중 하나의 투입요소의 4단위 세번이 최종재의 4단위 세번과 동일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중간투입품의 세번이 최종재의 세 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 기준만으로는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보충적 기준인 최소허용기준에 따르면 해당 중간투입품의 가격 혹은 무게가 최종재의 그것들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로 인정이 될 수 있다.

〈표 III-4〉 협정별 최소기준 비교

(단위: %)

국가	가격기준		중량기준
	일반품목	농수산물	섬유
칠레	8	-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8
싱가포르	10	- 1류~14류 적용제외 -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8
아세안	10	10%	10
인도	10	- 1류~14류 적용제외	7
EFTA	10	-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
미국	10	- 1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일부제외)	7
EU	10	10%	8~30 일부가격기준
터키	10	10%	적용제외
캐나다	10	- 1류~21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일부제외)	10
호주	10	- 1류~1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일부제외)	10
페루	10	- 1류~14류 적용제외	10

자료: 최흥석·이영달(2011), p. 167,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최소기준)

14) 관세청, 「원산지 결정기준」,

http://fta.customs.go.kr/kcsweb/template/html/fta/html/kor/orgwarty/popup/OrgBaseConf_popMiso.html, (접속일: 2015.08.01)

누적기준은 FTA 체결 양국(혹은 여러 국가)이 상대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재로 하여 다른 최종재를 생산하였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온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FTA 협정문 제 6.5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누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기준 역시 FTA 협정에 따라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차이를 보인다.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중간재들에 대해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앞서 설명한 특정공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몇몇 공정들에까지도 누적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협정별로 다르다. 한·미 FTA에서는 중간재와 특정공정 모두에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EU FTA의 경우 중간재에 대해서만 누적기준을 적용하고, 특정공정에 대해서는 누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생산되는 물품의 특성이나 공정에 따른 보충적인 기준들 또한 존재한다. 중간재 규정의 경우 역내산 제품과 역외산 제품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의 중간재를 생산한 뒤 이를 최종재 생산에 다시 사용한 경우 역외산 제품의 투입비까지 역내산 재료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가능물품 규정은 원유, 가스, 곡물, 베어링 등 물품의 특성이 균질한 제품들의 원산지에 따른 물리적 구분이 어렵거나 큰 비용을 초래할 때, 생산자가 선택하는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간접재료의 규정은 최종재 생산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것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의 경우 비원산지 물품이라 할지라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트 상품에 대한 규정은 성질이 상이한 두 제품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판매될 경우, 그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금액의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세트 상품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한·미 FTA의 원산지 엄격성 정도

이상에서 살펴본 원산지 기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 FTA 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은 다양한 기준을 조합하여 각 품목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품목의 엄격성 지수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들의 조합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원산지 기준이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Estevadeordal(2000),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8), Carrere and de Melo(2006), Estevadeordal, Harris and Suominen(2009)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산지 기준이 각 HS 6단위 혹은 4단위 품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HS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을 지수화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는 Estevadeordal(2000)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이 연구는 여러 원산지 기준 중 세번변경 방식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에 부가가치 방식 및 특정 공정기술 등을 조합하여 1에서 7까지의 엄격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표 Ⅲ-5>는 Estevadeordal (2000)에서 사용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CI(Change of item)은 세번 6단위 이상의 품목 수준에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은 세번 6단위의 변경을, CTH(Change of Tariff Heading)은 세번 4단위 변경, CC(Change of Chapter)는 세번 2단위 변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RVC(Regional Value Content)는 부가가치 기준을, Tech는 특정공정기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엄격성 지수는 세번 6단위 이상, 6단위, 4단위, 2단위 변경기준을 각각 1, 2, 4, 6 점으로 두고, 이러한 기준에 부가가치 변경방식 혹은 특정공정기준 등이 조합될 경우 1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세번 2단위 변경은 매우 상이한 HS 품목분류에 속하는 중간재만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엄격한 방식(6점)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특정공정기준이 추가될 경우 더욱 엄격해진다. 이와 반대로 세번 6단위 변경은 매

우 유사한 제품들이라 할지라도 세부 품목이 다를 경우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키기 쉬워진다.

〈표 III-5〉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

기준	엄격성지수
$y^* \leq C_i$	1
$C_i < y^* \leq C_{TSH}$	2
$C_{TSH} < y^* \leq C_{TSH+RVC}$	3
$C_{TSH+RVC} < y^* \leq C_{TH}$	4
$C_{TH} < y^* \leq C_{TH+RVC}$	5
$C_{TH+RVC} < y^* \leq CC$	6
$CC < y^* \leq CC+Tech$	7

자료: Estevadeordal(2000)

이처럼 원산지 규정의 엄격한 정도를 수치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들을 진행한 결과 보다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일수록 총무역량이 저해되며(Estevadeordal and Suominen, 2008) NAFTA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특혜관세 신청 유인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보였다(Carrere and de Melo, 2006).

본 연구에서는 Estevadeordal(2000)에서 제시한 위의 기준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여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정도를 품목별로 지수화하였다.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 협정서의 원산지 부속서 및 섬유 부속서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데,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Estevadeordal(2000)의 기본 분류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규정이 있다.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은 크게 세 가지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HS코드 6단위 초과 품목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CTSH(6단위), CTH(4단위), CC(2단위)의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번

변경 기준이 아닌 여타의 기준들 즉, 부가가치기준(RVC), 원재료 비중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RM), 특정공정기준(TECH) 등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며, 일부 품목에 있어 적용이 제외되는 세번이 존재하는 경우(ECTC)나 '특정세번으로부터 변경되었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번이 명시된 경우(*로 표시) 또한 있다.

〈표 III-6〉 한·미 FTA 원산지 기준

규 정	소 계
CC	828
CC or CTH*/CTSH*+RVC	1
CC or CTH*+RVC	25
CC or CTH+RVC	27
CC or CTSH*	41
CC or CTSH*+ECTC+RVC+RM	1
CC or CTSH*+RVC	43
CC or CTSH+RVC	14
CC or RVC	11
CC+ECTC	427
CC+ECTC or CTH*+RVC	1
CC+ECTC+RM	287
CC+ECTC+RM or CC/CTSH*/CTH*+RM or CTSH+ECTC or CC+ECTC or CC	3
CC+ECTC+RM or CTSH*	3
CC+RM	5
CC+TECH	4
CTH	1,876
CTH or CTH+ECTC or CTSH+RVC	6
CTH or CTH+RVC	5
CTH or CTSH*+RVC	67
CTH or CTSH+ECTC	8
CTH or CTSH+RVC	81
CTH or RVC	22
CTH+ECTC	433

〈표 Ⅲ-6〉의 계속

규 정	소 계
CTH+ECTC or CTH*+RVC	24
CTH+ECTC or CTH*+TECH	4
CTH+ECTC or CTH+RVC	2
CTH+ECTC or CTSH*	14
CTH+ECTC or CTSH*+RVC	15
CTH+ECTC or CTSH+RVC	2
CTH+ECTC+RVC or CTSH	32
CTH+RVC	49
CTH+RVC or CTSH*+RVC	8
CTSH	695
CTSH or RVC	59
CTSH* or CTSH or RVC	1
CTSH*+RM	2
CTSH*+RVC	1
CTSH+ECTC	67
CTSH+ECTC or CTH*/CTSH*+RVC	1
CTSH+ECTC or CTSH or RVC	14
CTSH+ECTC or CTSH*+RVC	15
CTSH+RVC	3
RVC	31
총계	5,258

자료: 「한·미 FTA 협정서 원산지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Ⅲ-6〉은 HS코드 6단위별 원산지 기준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전체 5,258개의 HS 6단위 코드들 중 대다수가 CC, CTH, CTSH의 세변변경 기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HS 4단위 변경을 의미하는 CTH로 1,876개의 품목들이 분류되었으며, HS 2단위 변경을 의미하는 CC로 828개가, 마지막으로 HS 6단위 변경을 의미하는 CTSH로 695개의 품목들이

분류되었다.

또 다른 특징은 CC 기준 및 CTH 기준,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서 파생된 또 다른 기준들의 비중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에서 조사된 PANEURO 방식의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는 여타의 FTA들에 비해 10%가량 높은 편이며, NAFTA에 비해 11%가량 낮은 편이다. 이는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이 PANEURO 방식에 비해서는 엄격한 편이나 NAFTA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표 III-7〉 FTA별 원산지 기준의 분포

규정	EU-남아공	EU-멕시코	EU-칠레	NAFTA
NC	0.39	0.39	0.39	0.54
NC+ECTC	2.39	2.04	2.39	-
NC+TECH	1.39	1.39	1.39	-
NC+ECTC+TECH	0.00	0.00	0.00	-
NC+RVC	11.46	10.91	11.90	-
NC+ECTC+RVC	1.57	1.57	1.57	-
NC+RVC+TECH	0.08	0.20	0.20	-
NC+WHOLLY OBTAINED CHAPTER	7.62	7.62	7.62	-
NC+WHOLLY OBTAINED HEADING	0.70	0.70	0.70	-
소계	25.60	24.82	26.16	0.54
CH+ECTC	-	-	-	0.02
CH+ECTC+RVC	-	-	-	0.02
소계	0.00	0.00	0.00	0.04
CTSH	0.20	0.20	0.20	1.29
CTSH+ECTC	0.00	0.00	0.00	2.52
CTSH+TECH	1.90	1.90	1.78	0.04
CTSH+ECTC+TECH	0.00	0.00	0.00	0.40
CTSH+RVC	0.27	0.27	0.27	-
CTSH+ECTC+RVC	0.00	0.00	0.00	0.10
CTSH+RVC+TECH	0.00	0.00	0.00	-
CTSH+ECTC+RVC+TECH	0.00	0.00	0.00	-
소계	2.37	2.37	2.25	4.35

〈표 III-7〉의 계속

규정	EU-남아공	EU-멕시코	EU-칠레	NAFTA
CTH	32,99	32,99	32,86	17,09
CTH+ECTC	4,60	5,13	4,56	19,18
CTH+TECH	0,00	0,00	0,00	0,02
CTH+ECTC+TECH	6,66	6,66	6,66	0,14
CTH+RVC	13,01	12,68	12,78	3,54
CTH+ECTC+RVC	0,37	0,86	0,37	0,58
CTH+RVC+TECH	0,00	0,00	0,00	0,10
CTH+ECTC+RVC+TECH	0,02	0,02	0,02	
소계	57,65	58,34	57,25	40,65
CC	2,16	2,16	2,16	30,95
CC+ECTC	1,02	1,02	1,02	17,71
CC+TECH	0,04	0,04	0,04	0,02
CC+ECTC+TECH	11,02	11,25	11,02	5,76
CC+RVC	0,00	0,00	0,00	
CC+ECTC+RVC	0,00	0,00	0,00	
CC+RVC+TECH	0,00	0,00	0,00	
CC+ECTC+RVC+TECH	0,00	0,00	0,00	
소계	14,24	14,47	14,24	54,44
총계	100	100	100	100

주: CC: Change of Chapter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ECTC: Exception to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RVC: Regional Value Content

TECH: Technical Requirement

CI: Change of Item

NC: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d

자료: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p. 16, Table 3 STRUCTURE OF RoO IN SELECTED FTAs, 재인용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이 이처럼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여 Estevadeordal(2000)의 기준만으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를 도출할 수 없어 이 연구에서는 김한성 외(2008)과 같이 추가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엄격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Estevadeordal(2000)의 기준을 CTSH(6단위), CTH(4단위), CC(2단위)에 적용하여 각각 2, 4, 6의 지수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세번변경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RVC), 원재료 비중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RM), 특정공정

기준(TECH) 등은 해당 지수에서 추가될 경우 엄격성 지수를 올리고, 적용이 제외되는 세번이 있는 경우(ECTC)나 '특정세번으로부터 변경되었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번이 명시된 경우(*로 표시)는 제외되는 항목 혹은 지정된 항목의 비중에 따라 그 정도를 상대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수화된 항목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Ⅲ-8>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지수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성 지수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겠으나 다수의 기준들이 세번변경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있고 세번변경 기준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성이 전체적인 엄격성 지수의 객관성 정도를 해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표 Ⅲ-8〉 한·미 FTA 엄격성 지수

엄격성지수	원산지 규정
2	CTSH; CTSH+ECTC
2~4	CTSH*+RM; CTH or CTSH+ECTC
	CTSH+ECTC or CTSH or RVC; CTSH* or CTSH or RVC
	CTSH or RVC
4	CTH+ECTC+RVC or CTSH; CTSH+ECTC or CTSH*+RVC
	CTH; CTH+ECTC
	CC+ECTC+RM or CC/CTSH*/CTH*+RM or CTSH+ECTC or CC+ECTC or CC
	CTH or CTSH+RVC; CTH or RVC
	CTH or CTH+RVC; CTH+ECTC or CTSH*
	CTH+ECTC or CTSH+RVC; CTSH+RVC; CTSH*+RVC
4~5	CTH or CTH+ECTC or CTSH+RVC; CTSH+ECTC or CTH*/CTSH*+RVC
	CTH or CTSH*+RVC; CTH+ECTC or CTH*+TECH
	CTH+ECTC or CTH+RVC; RVC; CTH+RVC; CTH+RVC or CTSH*+RVC
	CTH+ECTC or CTH*+RVC; CTH+ECTC or CTSH*+RVC
	CC or RVC; CC or CTSH+RVC
6	CC or CTH*/CTSH*+RVC; CC or CTSH*+RVC
	CC or CTH+RVC; CC or CTH*+RVC; CC+ECTC or CTH*+RVC
	CC; CC+ECTC
6 이상	CC or CTSH*+ECTC+RVC+RM; CC or CTSH*
	CC+RM; CC+TECH
	CC+ECTC+RM; CC+ECTC+RM or CTSH*

자료: 「한·미 FTA 협정서 원산지 부속서 및 섬유 부속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분석자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HS 10단위별 수입액과 관세납부액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인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입된 품목별 관세율 코드를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품목별 관세율은 실제 수입액 대비 관세납부액의 비율로 산출하였다.¹⁵⁾ 각 HS 10단위별 산업구분은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 사용한 대분류 기준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자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발표한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HS 10단위별 수입액 자료를 사용하였다. 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품목별로 한·미 FTA 적용 여부를 데이터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 중 미국으로 반품되는 품목과 같이 직접적인 무역으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을 제외하였다.

두 자료 모두 종가세(Ad valorem tariff) 항목뿐만 아니라 종량세(specific tariff)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의 추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종량세 항목들은 본 추정식에서 배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 추정식

실증분석에 사용한 추정식이 기반한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경우 일반관세율(FTA 미 적용)과 특혜관세율(FTA 적용)의 격차를 FTA 활용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고려하였다. 일반관세율 수준이 특혜관세율 수준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소모하며 특혜관세를 신청할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즉, 수입업자들은 둘 사이의 격차가

15) 각 품목별로 관세율 코드가 있어 이 코드에 적용되는 관세율 자료를 병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나 일부 품목에서 계산된 관세율과 해당 코드의 관세율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경우 관세 납부액 자료가 아닌 관세율 코드가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계산된 관세율 자료를 각 품목별로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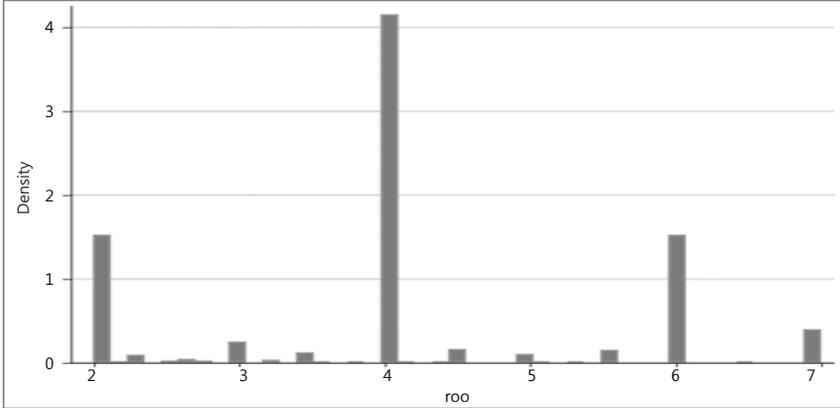
크면 클수록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가 높을수록 동일한 세율격차하에서도 특혜관세율 적용을 수입업자들이 꺼리게 될 것이다. 만약 원산지 규정이 매우 엄격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것에 따른 경제적 이익 대비 그 비용이 매우 클 경우, 특혜관세율이 일반관세율에 비해 낮다 하여도 해당 품목의 FTA 특혜관세 적용률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품목별 FTA 특혜관세 적용률과 관세율 차이(일반관세율 - 특혜관세율)의 관계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설을 점검하기 위해 HS 6단위별 품목들을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지수 크기에 따라 정렬한 뒤 나열하여 그 순서를 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HS 6단위별 품목들을 3개의 그룹들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g 를 그룹 인덱스로 표시하면, $g = 1$ 인 그룹이 엄격성 지수가 가장 낮은 그룹을 뜻하며 $g = 3$ 인 그룹이 엄격성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을 의미한다.

2에서 7까지 존재하는 엄격성 지수들을 단지 세 그룹으로 구분한 것은 엄격성 지수의 분포에 기인한다. [그림 Ⅲ-1]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있는 HS 6단위 코드들의 엄격성 지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품목 중 40% 이상이 지수 4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지수 2와 지수 6에도 큰 수의 품목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산지 규정의 기본적인 형태가 CC, CTH, CTSH의 세 가지 세번변경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엄격성지수의 그룹화 역시 지수 2, 4, 6을 기준으로 크게 3그룹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III-1] 엄격성 지수 분포



출처: 저자 작성

이렇게 산출된 품목별 그룹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추정식을 OLS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frac{FTA_{i,t}}{Total\ Import_{i,t}} = D_{id} + D_t + \sum_{g=1}^3 \beta_g I^g + \sum_{g=1}^3 \beta_f^g (tgap_{i,t} \cdot I^g) + \epsilon_{i,t}$$

여기서 $\frac{FTA_{i,t}}{Total\ Import_{i,t}}$ 는 품목 i 의 t 연도의 전체 수입액 중 FTA를 통한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하며 $tgap_{i,t}$ 는 품목 i 의 t 연도의 관세율 차이(일반관세율 - FTA 특혜관세율)를 의미한다. I^g 는 Indicator 함수로 해당 품목 i 가 g 그룹에 해당될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추정식은 2010년 산업연관표 대분류 기준 산업더미 D_{id} 와 연도별 더미 D_t 또한 포함하고 있다.

β_f^g 의 크기와 부호가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FTA 적용에 따른 혜택이 클수록 더 높은 비중의 FTA 통관을 기대할 수 있기에 β_f^g 의 부호가 모든 그룹에서 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울수록 FTA 적용에 따른 이익($tgap_{i,t}$)이 FTA 통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될 것이기에 β_f^g 값이 그룹 1에 비해 그룹 3에서 작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원산지 기준의 높은 엄격성으로 인한 불이익의 수준이 매우 높을 경우 $tgap_{i,t}$ 이 $\frac{FTA_{i,t}}{Total\ Import_{i,t}}$ 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이 아주 낮아질 것이고, 이러한 정도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면 엄격성 지수가 높은 그룹의 β_j^g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값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추정결과

여기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추정식을 한·미 FTA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수입실적 자료 및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각각 활용하여 위 추정식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수입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III-9>에 정리하였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FTA 특혜관세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 ($tgap$)이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그룹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3개의 행을 보게 되면 $tgap$ 항목과 각 그룹별 indicator 함수와의 교차항의 결과가 표시되고 있는데, 모든 그룹에서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그룹에서 FTA 특혜관세율과 일반관세율의 격차가 클수록 FTA 특혜관세를 통한 통관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9> 추정 결과(우리나라)

	계수	표준편차	t	P > t
$tgap \cdot I^1$	4.483	0.126	35.59	0.000
$tgap \cdot I^2$	2.480	0.101	24.63	0.000
$tgap \cdot I^3$	1.400	0.088	15.90	0.000
I^2	0.137	0.009	15.81	0.000
I^3	0.187	0.010	18.57	0.000
D_{2013}	0.097	0.005	18.64	0.000
D_{2014}	0.097	0.005	18.49	0.000
Adj R^2	0.169			
Num obs	24,666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이 표는 $tgap$ 이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원산지 엄격성 지수를 근거로 한 그룹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룹별 y -절편을 의미하는 더미들을 보면, 세 번째 그룹(I^3)의 크기가 가장 크긴 하나 세 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tgap$ 변화가 그룹별로 미치는 FTA 활용률의 차이는 그룹별로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I^1)의 경우 계수의 값이 4.483인 데 반해 세 번째 그룹(I^3)의 경우 그 값이 1.400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실제로 FTA를 통한 수입액 비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산지 규정이 매우 엄격한 품목(I^3)들은 그렇지 않은 품목들에 비해 동일한 $tgap$ 수준에서도 더 낮은 FTA를 통한 수입액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III-10〉 주요 변수의 통계량(우리나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rac{FTA_{i,t}}{Total\ Import_{i,t}}$	0.3364	0.3670	0	0.9999
$tgap$ (그룹1)	0.0323	0.0350	0	0.13
$tgap$ (그룹2)	0.0432	0.0318	0	0.36
$tgap$ (그룹3)	0.0578	0.0513	0	0.45

자료: 저자 작성

각 그룹별 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그룹1의 β_1 값인 4.483은 $tgap$ 이 1%p 증가할 경우 $\frac{FTA_{i,t}}{Total\ Import_{i,t}}$ 이 약 4.483%p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그룹2에 있어서는 $tgap$ 이 1%p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약 2.5%p, 그리고 그룹3에서는 약 1.4%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원산지 기준이 가장 엄격하지 않은 품목들에서 동일한 $tgap$ 변화에 대해 더욱 크게 반응한다. 그룹1의 반응 정도는 그룹 2에 비해 약 1.8배, 그리고 그룹3에 비해 약 3.2배로 나타나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정도가 FTA 활용률

에 실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검증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의 한·미 FTA 활용률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표 III-11>은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 역시 우리나라 수입실적자료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된 관심인 $tgap$ 항목과 각 그룹별 indicator 함수와의 교차항의 경우 모든 그룹에서 추정된 계수의 부호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추정계수들의 유의성을 보게 되면 그룹 1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약 10% 수준에서 근소하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원산지 규정이 가장 엄격하지 않은 품목들에 있어서만 $tgap$ 이 $\frac{FTA_{i,t}}{Total\ Import_{i,t}}$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타의 그룹들에서는 $tgap$ 이 유인효과로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11> 추정 결과(미국)

	계수	표준오차	t	P > t
$tgap \cdot I^1$	0.3763	0.174	2.17	0.030
$tgap \cdot I^2$	0.2326	0.145	1.61	0.108
$tgap \cdot I^3$	0.1427	0.089	1.59	0.112
I^2	0.0025	0.014	0.17	0.862
I^3	0.0643	0.016	4.03	0.000
D_{2013}	0.1788	0.008	22.22	0.000
D_{2014}	0.1727	0.008	21.59	0.000
Adj R^2	0.0812			
Num obs	11,565			

자료: 저자 작성

〈표 III-12〉 주요 변수의 통계량(미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rac{FTA_{i,t}}{Total\ Import_{i,t}}$	0.5859	0.3671	0	1
<i>tgap</i> (그룹1)	0.0414	0.0505	0	0.48
<i>tgap</i> (그룹2)	0.0414	0.0355	0	0.3
<i>tgap</i> (그룹3)	0.0809	0.0624	0	0.32

자료: 저자 작성

그룹별 계수의 크기 역시 우리나라 수입실적 자료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산지 기준이 매우 엄격한 그룹3의 경우 그룹1이나 그룹2에 비해 β_I^g 값이 상당히 낮게 분석되었다. 그룹1의 경우 *tgap*이 1%p 증가할 경우 $\frac{FTA_{i,t}}{Total\ Import_{i,t}}$ 가 약 0.38%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두 그룹에서는 이 크기가 그룹1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룹1의 계수값은 0.3763으로 그룹2의 계수값의 약 1.6배이며 그룹3의 계수값의 약 2.6배로 나타났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한 결과값이 우리나라 수입실적 자료를 이용한 결과값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각 계수의 크기에 있다. 우리나라 수입실적 자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tgap*에 대한 FTA 활용률의 반응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하게도 일반관세율 수준이 15%를 초과하는 자료들을 배제할 경우 FTA 활용률의 반응 정도가 상당히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국은 일부 품목들에 한해 매우 높은 일반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 중 ‘섬유 및 가죽제품’ 또한 이에 해당한다. 즉, 섬유 및 가죽제품군의 매우 높은 일반관세율 항목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tgap*에 대한 FTA 활용률의 반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수입실적 자료와 미국자료상에서 나타나는 반응도의 차이는 미국의 일반관세율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분석

이 필요하다.

비록 계수값의 절대적인 크기는 우리나라 수입실적 자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원산지 규정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수입액 자료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 엄격한 품목들에 있어 *tgap*이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한성 외(2008)의 연구결과와는 크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김한성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한·미 FTA가 아닌 다른 FTA들을 활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지만, 분석 결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FTA 활용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特惠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일수록 총무역량이 저해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8) 및 NAFTA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特惠관세 신청 유인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을 보인 Carrere and de Melo(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와 FTA 활용

한·미 FTA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상의 결과는 원산지 규정이 실제 FTA 통관 유인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한·미 FTA 협정에 의해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확정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이라 할지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와 발급된 증명서를 검증하는 절차 등에서 수출입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및 원산지 검증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한 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가.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통관되는 물품이 FTA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과정은 크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 검증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업자가 특혜관세 신청 이전에 행하는 사전적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원산지 검증 절차는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사후적으로 행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크게 자율발급제와 기관발급제로 구분된다. 자율발급제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며, 기관발급제란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혹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이다.¹⁶⁾ <표 Ⅲ-13>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표시하고 있다.¹⁷⁾ 무역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미국과 EU의 경우 모두 자율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를 제외한 여타의 FTA 역시 자율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발급제에 비해 자율증명제가 갖는 장점은 행정 비용 절감이 될 것이다. 수출업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FTA 통관에 따른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수출업자가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에 사후적인 원산지 검증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발급제의 경우 자율발급제에 비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급기관이 과연 실질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발급기관 및 수출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EU의 경우 주로 기관발급제를 사용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율발급제로 제도를 변경하였는데, 방호경

16)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05&layoutMenuNo=30717#none. (접속일: 2015.10.01)

17) 관세청 홈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FTA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04)는 EU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다음의 이유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기관발급제가 제품의 우회수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량이 방대하여 기관에서 건별로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기관이 수출업자가 제시한 허위 정보에 바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수입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신뢰를 갖게 하여 수입업자와 수출국의 발급 기관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EU의 변화는 현재 기관발급제를 사용하고 있는 협정들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의미함과 아울러, 무역량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질 경우 자율발급제로 이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전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실질적 한계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기에 사후적인 검증 절차인 원산지 검증 요청 및 관련 분쟁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3〉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캐나다	호주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5년간),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의)	인도 (수출감시위원회) 한국 (세관, 상의)	수출자	페루 (통상관공부) 한국 (세관, 상의) 자율(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됨)	생산자, 수출자	기관증명
유효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	4년	1년	2년	2년

주: ASEAN 국가별 정부기관: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스:상공회의소(2012. 7. 1~)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 세관/ 베트남: 통상부/ 태국: 상무부

자료: 관세청, 스마트 FTA http://fta.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502&layoutMenuNo=24010, (접속일: 2015. 10. 26)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각 나라별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tfa/lov5/ci/2/>, (접속일: 2015. 10. 26)

원산지 검증 방식 역시 각 FTA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출업자가 속한 국가의 세관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를 간접검증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수입업자가 속한 국가의 세관이 직접 수출국의 업체를 서면 혹은 방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직접검증이라 부른다.¹⁸⁾

〈표 Ⅲ-14〉는 현재 발효되어 있는 FTA 협정들의 원산지증명서 검증 절차 방식을 정리하고 있다.¹⁹⁾ 다수의 협정들에서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이 혼합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미 FTA처럼 특정 품목들에 한해서만 간접검증을 허용하는 방식 또한 존재한다.

원산지 검증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수출자 혹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검증 질의에 대한 답변의 회신기한이 다소 촉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신기간은 30일에서 10개월까지로 조사되었는데, 교역량이 많아지고 원산지증명서의 실질적 사전 점검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원산지 검증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기한 내에 원산지 검증에 응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비용이 수입업자에게 지워질 수 있다.

〈표 Ⅲ-14〉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주체	회신기한
한·칠레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수출자, 생산자	30일
한·싱가포르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소명서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수출자, 생산자	30일
한·E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수출국 세관	10개월
한·아세안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방문조사	수출국 세관	2개월

18) 관세청, 「원산지 검증」,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 (접속일: 2015.10.28)

19)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누락된 협정의 경우 FTA 협정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14〉의 계속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주체	회신기한
한·인도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수출국 세관	3개월
한·EU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수출국 세관	10개월
한·페루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정보의 서면 요청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 조사	수출자, 생산자	90일
한·미	간접검증 방식 적용(섬유제품에 한함)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수출자, 생산자	30일
한·터키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	수출국 세관	10개월
한·호주	-	방문검증 동의 요청, 동의 후 방문조사 (수출국세관 검증참관)	수출자, 생산자	30일
한·캐나다	-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 (동행참관인 지정 가능)	수출자, 생산자	30일

자료: 관세청, 「원산지 검증」,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2811&layoutMenuNo=30725, (접속일: 2015.09.22)

FTA강국, Korea, 「우리나라의 FTA」,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접속일: 2015.10.26)

나. 미국과 EU의 원산지 검증제도 운용 현황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교역규모가 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상대국에서의 원산지 검증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은 다수의 FTA 협정에서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

〈표 III-15〉 미국 주요 무역협정별 검증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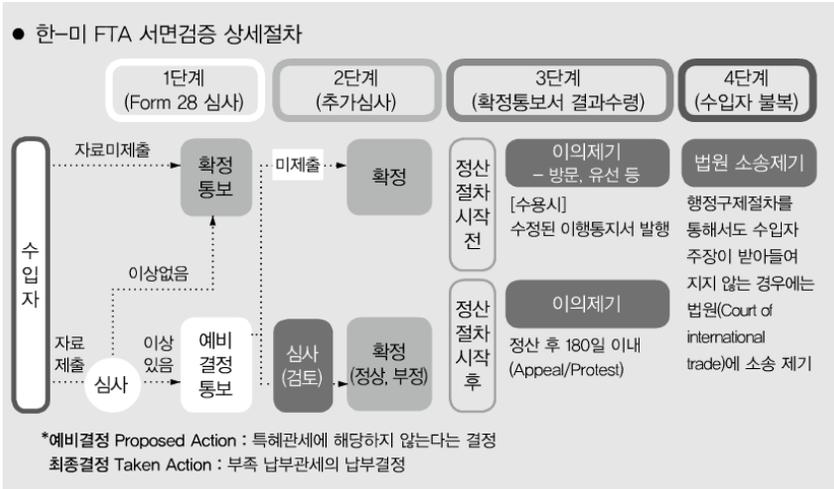
협정명	상대국	검증방식	세부사항
미·호주 자유무역협정	호주	직접검증	서면요청, 방문검증
미·도미니카 공화국/중앙 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CAFTA-DR)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콜롬비아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국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 멕시코		
미·파나마 자유무역협정	파나마		
미·페루 자유무역협정	페루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싱가포르		
미·칠레 자유무역협정	칠레*		

주: 칠레의 직접검증은 섬유에 국한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hile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Information",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hile_trade_agreement_3.pdf. (접속일: 2015.10.28)
 자료: Export.gov, "U.S. Free Trade Agreement," <http://www.export.gov/FTA/index.asp>. (접속일: 2015.10.26) 각 협정문들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국의 직접검증 절차는 서면조사와 현지방문 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서면 조사의 경우 수출자 혹은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면조사가 불충분할 경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 심사 과정을 통해 특혜관세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서류상 이상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대상으로 확정 통보되고 필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관세 제외 대상으로 확정통보된다. 추가 심사 과정을 통한 결정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그림 III-2] 한·미 FTA 서면검증 절차 자료



자료: 관세청(2015),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 p. 148.

현장조사의 경우 검증팀이 사전통지 없이 검증대상 업체에 도착하여 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업체 동의 시 조사가 시작된다. 만약 업체 측이 검증에 불응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조사는 인터뷰 단계와 공장 확인 단계를 거쳐 결과가 결정된다.

<표 III-16> 한·미 FTA 현장 검증팀의 검증절차

1단계: 현지업체 방문 조사통지	- 검증팀은 사전통지 없이 검증대상으로 선별된 업체에 도착 - 조사 통지 후 동의 요청, 업체가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조사 시작 -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혜배제 대상이 됨
2단계: 인터뷰	- 업체(사업) 현황/생산현황/거래관계에 대해 인터뷰 - 검증 대상 수출 건의 거래 사실이나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인터뷰 -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
3단계: 공장확인	- 원재료 보관 구역, 공정 생산라인 및 기계류 수량 - 마무리 공정 및 제품 포장 구역 등 확인 - 실제 생산공정 수행 및 역외산 원재료 사용 가능성 등을 확인

자료: 관세청(2015), 「원산지 검증동향」, July 1, p. 2.
http://www.customs.go.kr/kcshome/cmm/ims/FileDown.do?jsessionid=RT9kVJZLkblG0g8JVlBr5R3ChLTFbVvrSDyMGY3p7QZGLWJpqQy7!-246735781?atchField=FILE_000000000358477&fileSn=0. (접속일: 2015.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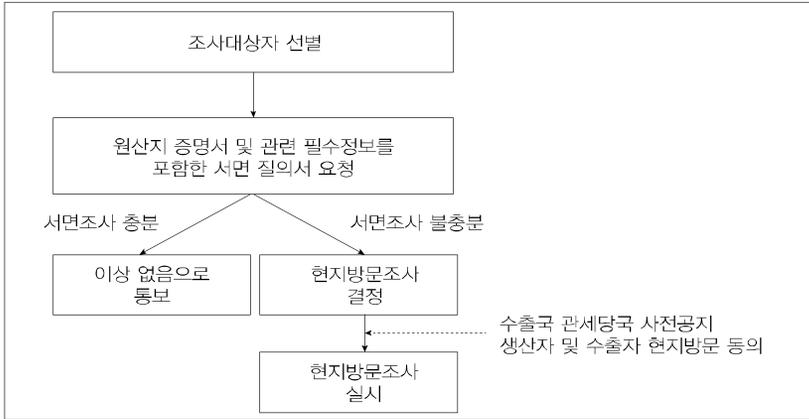
EU는 기본적으로 간접검증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EU FTA 협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 2항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물품들은 수출국의 관세당국, 즉 우리나라 세관에 의해 검증이 수행되게 되고(제27조 4항) 검증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혜대우 부여가 정지된다(제27조 5항). 만약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나 회신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특혜자격을 거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제27조 7항). 이러한 원산지 관련 규정들은 단지 한·EU FTA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유럽 내·외부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 규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표 III-17〉 참고).

〈표 III-17〉 EU 주요 무역협정 원산지 검증 형태

협정명	주요 EU 체약상대국	검증형태	검증기준
안정재후협정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간접검증	무작위로, 합리적인 의심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콜롬비아, 페루, 한국	간접검증	무작위로, 합리적인 의심
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칠레, 마다가스카르, 짐바브웨, 모리셔스, 이라크, 카리브연안국	간접검증	무작위로, 합리적인 의심
관세동맹협정 (Customs Unions)	터키	간접검증	합리적인 의심*
연합협정 (Association Agreement)	중앙 아메리카국가, 지중해연안국	간접검증	무작위로, 합리적인 의심

주: 관세동맹협정에서는 reasonable doubt 대신 well-founded doubt으로 표현
 자료: 각 국가와 EU 간 무역협정문을 참고하여 작성, European Commission, “Trade Agreement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agreements/>. (접속일: 2015.10.27)

[그림 III-3]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절차



자료: 김한성 외(2008) p. 41을 참고하여 작성

다. 원산지 검증 현황

앞선 실증분석에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이와 더불어 원산지 검증 자체도 엄격해지고 있어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원산지 기준이 각 협정별·품목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특혜관세를 신청하려는 신청자 및 이를 관리하는 담당 정부부처의 행정적인 어려움 또한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 정리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원산지 검증 절차는 원산지증명서가 다량의 무역거래에 대해 원산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이상 원산지 검증 요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II-18〉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FTA 상대국가의 검증 요청은 2012년 222개 업체 대상 515건에서 2014년에는 297개 업체 대상 2,88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FTA 상대국가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6개 업체 293건에서 2014년에는 492개 업체 3,32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III-18〉 원산지 검증 요청

(단위: 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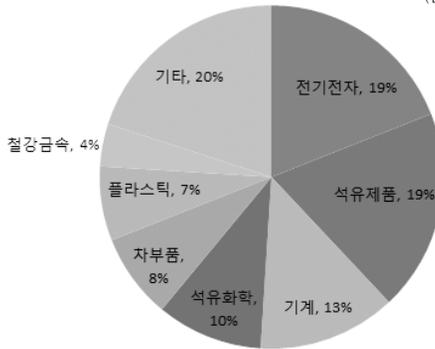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수입검증 (우리나라 요청)	업체 수	26	39	35	37	75	251	492	955
	c/o 건수	293	226	714	576	1,532	1,923	3,323	8,587
수출검증 (상대국 요청)	업체 수	7	7	6	84	222	291	297	914
	c/o 건수	23	41	22	122	515	2,512	2,886	6,121

자료: 관세연감(2015), p. 110.

보다 자세하게 FTA 상대국이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검증을 요청한 산업군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석유제품,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이들 산업에 원산지증명서 검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4] 산업별 수출검증 비중

(단위: 검증완료 업체기준, %)



자료: 관세청, 섬유직물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간담회, p. 7 (2015. 4. 30).

우리나라에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요청하는 FTA 상대국을 보면, 최근 3년 간 동안 EU가 81%로 압도적으로 많다. 아세안이 최근 3년 동안 98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여 완료되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3건이었지만, EU의 경우에는 581건에 이른다. 또한 섬유산업에 경우에도 EU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섬유 관련 검증을 제외하더라도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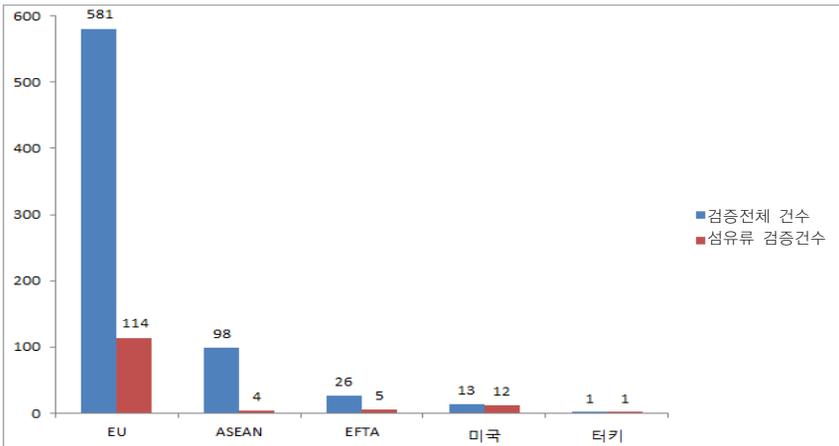
·전자, 기계류에 대해 가장 많은 검증을 요청한 국가가 EU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이 14%로 두 번째로 많은 검증요청을 했으나, EU의 검증 횟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섬유류 관련 검증 요청은 EU가 약 80%, 그 다음으로 미국, EFTA 순이다. 미국의 경우, 검증요청 13건에 대해 12건이 섬유류 관련 검증 요청으로 섬유 원산지의 검증이 많은 편이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검증이 완료된 업체 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가별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I-5] 협정별 수출검증 현황

(단위: 검증완료 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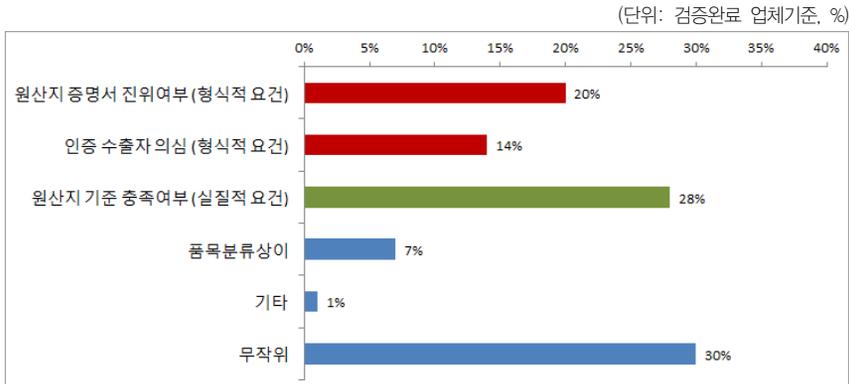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섬유직물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간담회, p. 8 (2015.04.30).

FTA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유는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미충족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요건 미충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나 인증번호 확인 등 원산지 증명에 대한 서류상의 실수로 인한 검증이며, 실질적 요건은 제3국산 제품의 허위 표시 등 실질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산지 검증 요청 사유를 보면, 실질적인 요건보다 형식적인 요건이 더 많다.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증요청이 총 34%를 차지하며, 실질적 요

건의 경우 총 사유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특징으로, 각 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한 검증 사유와는 별개로 무작위로 검증을 요청한 경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수출검증 요청 사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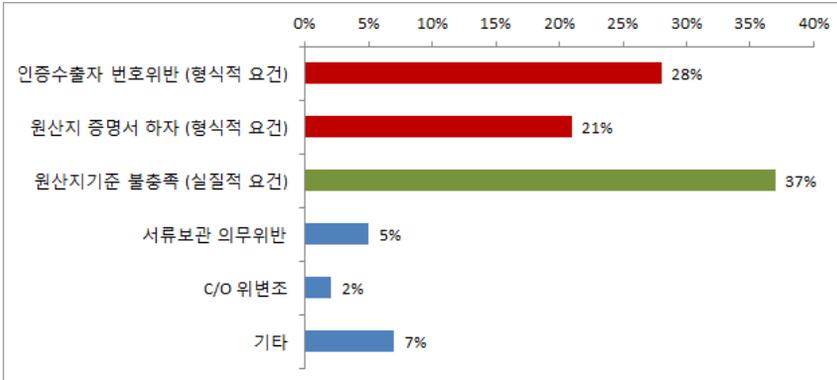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섬유직물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간담회, p.9 (2015.04.30).

그리고 수출검증 결과 원산지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원산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약 37%이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유형의 절반인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형식적·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실질적인 요건보다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III-7] 수출검증 위반 유형 비중

(단위: 검증완료 업체기준, %)



자료: 관세청, 섬유직물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간담회, p. 10 (2015.04.30).

라. 원산지 검증 관련 분쟁 사례

이처럼 증가하는 원산지 검증 요청은 특혜관세 혜택이 부여되었던 품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 특혜관세 혜택이 취소되고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음에서 소개할 사례들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 수입업체와 관세당국 간의 원산지 규정 해석을 두고 벌어진 분쟁으로서 현행 원산지 검증 제도의 문제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사례: 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제로 인한 책임소재 분쟁 사례²⁰⁾

수입업자는 EU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한·EU FTA에 의거 특혜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0) 조세심판원, 조심2015관0109,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141755&menuNm=demList (접속일: 2015.09.16)

이후 관세당국은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수출국 관세당국은 ‘해당국 원산지 제품임을 알 수 없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관세당국은 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입업자가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수입자가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원산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입업자의 불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주장하였다. 수출업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였으며 수출된 의류의 라벨에도 수출국의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 이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업자는 수입자의 지위에서 수출자의 기밀에 속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 원산지 자율증명제의 단점을 극명히 보여준다. 수출업자가 허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입업자가 이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고, 이를 신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뒤 번복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국내 수입업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2) 회신기간

사례: 회신기간 내 검증결과가 오지 않은 경우 원산지 검증 분쟁 사례²¹⁾

수입업자는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관세당국은 수입업자가 제출한 원

21)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272,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139526&menuNm=demList (접속일: 2015.09.16)

산지신고서상의 인증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에 잘못이 있다 판단하여 서면 조사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원산지신고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입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결과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 내 미회신'을 근거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수입업자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례이다.

심판원은 수입신고 시 수입업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여 문서를 세관장에게 팩스로 회신한 점과, 그 회신문서에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잘못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것은 수출업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할 것을 판결하였다.

이 분쟁 사례에서는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회신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 사례에서는 심판결과 특혜관세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나, 검증 결과가 기한 내 회신되지 않아 수입업자가 큰 피해를 본 사례 또한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 금과 사례이다.

스위스 금과 사례는 정재호 외(2012)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²²⁾ 스위스 금과 사례는 한·EFTA를 근거로 특혜세율 0%를 적용받아 국내로 수입된 스위스산 금과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추후 기본세율 3%를 부과한 분쟁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스위스 관세당국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스위스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해 스위스 금과 수출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한 뒤 최종적으로 금과의 원산지가 스위스임이 판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의

22) 정재호(2012), pp. 12~22.

결과가 「FTA 관세특례법」상의 회신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금과 수입업자들에 대한 관세 추징은 반복되지 않아 그 피해가 금과 수입업자들에게 귀속되고 말았다.

3) 증명서 보관기관

사례: 원산지 증명 관련 증빙자료 보존과 관련된 분쟁 사례²³⁾

2006~11년 유럽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의약품을 수입하는 회사는 한 E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았다. 2011년 제3국에서도 같이 생산되는 9개 품목에 대해 EFTA 해당국으로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하였으나, 자국법상 서류보관기간인 3년이 지났으므로 2008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고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 검증회신을 하자, 우리나라 세관은 원산지 검증회신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수입사는 EFTA 해당국 관세당국으로부터 “2008년 12월 이전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서는 자국 「관세법」에 규정된 서류 보관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요청받은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없으나 원산지와 모순되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회신 내용을 우리나라 세관에 전달하였고, 쟁점물품 수출자 및 청구법인은 원산지검증 관련 모든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검증을 수행할 수 없다는 관세당국의 회신내용만을 근거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EFTA FTA협정 부속서 I」 제24조 6항에서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상품이 EFTA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관세당국은 국내 수입자 조사 시 청구법인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한

23)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058,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125306&menuNm=demList (접속일: 2015.09.16)

원산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해외검증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라며 수입사 측에서 청구한 심판을 기각했다.

4) 증명서 유효기간

사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과 관련된 분쟁 사례²⁴⁾

2012년 수입사가 브루나이로부터 우리나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013년 관세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물품이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위해서 신청됨을 발견하여 가산세와 협정관세 적용 배제를 사전 통지하였다.

수입사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으며, 이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에 해당하며, 발급된 진정등본 또한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 3」 부록1 제8조에 따라 “진정등본은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수입국으로 운송 중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이 사건 물품이 국내 입항 및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후에 발급된 것이며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도과는 원산지증명서 분실에 기인한 것이지 불가항력 또는 수출자/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어떠한 사유에 따

24) 관세청 법령정보, 적부심사 제2013-86호,
<http://www.customs.go.kr/kcshome/law/precedent/PrecedentUserDetail.do?layoutMenuNo=20225&class1=1¤tPageNo=1&searchCondition=no&searchKeyword=%EC%A0%81%EB%B6%80%EC%8B%AC%EC%82%AC+%EC%A0%9C2013-86%ED%98%B8&startDate1=&endDate1=&startDate2=&endDate2=&deccNo=631> (접속일: 2015.09.16)

른 것이 아니라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마. 원산지 검증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분쟁 사례들은 원산지 규정이 실제 FTA 활용에 있어 다양한 경로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우선,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수출입업자가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들이 있다. 원산지 증빙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관에서 발급받거나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하는 등의 분쟁은 FTA를 활용하려는 수출입업자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검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수출입업자가 이러한 기준들을 숙지하는 데에 분명 애로사항이 있다.

다음으로, 정해져 있는 원산지 검증 기준 자체가 분쟁 촉발의 씨앗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의 경우 수출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업자를 속일 경우 이에 대한 피해가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분쟁 사례는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출업자에게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만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발급제를 시행하는 FTA 협정의 활용률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 다른 예로는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 기한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상대국 관세당국이 검증 요청에 늦게 회신할 경우 그 피해가 수입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상대국 관세당국이 수입업자의 영향력 밖에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각국 관세당국의 행정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분쟁 사례가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쟁 사례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대응방안을 자연스럽게 제시하

고 있다. 우선, 현행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궁극적인 책임은 수출입업자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들의 경우 관세당국과 수출입업자의 FTA 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됨에 따라 충분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원산지 검증 기준의 모순으로 인한 분쟁 사례들의 경우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원산지 회신 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이 규정 적용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스위스 금괴 사례에서와 같이 상대국에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원산지 검증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기한을 회신 기한에서 제외하는 식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대국 관세당국의 기한 내 미답변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현행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불가피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의 예외 적용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재완(2012)에서도 「FTA 관세특례법」으로 인해 수입업자인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간접검증기간 경과로 인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회신이 온 이후에는 과오납금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결론적으로 현행 원산지 검증 규정 복잡성은 다양한 형태의 분쟁 사례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FTA 활용이 저해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검증 절차에 대한 유연한 해석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더불어 모순성이 존재하는 FTA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25) 정재완(2012), p. 70.

3.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²⁶⁾

앞서 원산지 기준의 복잡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원산지 검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언급하고자 한다. 이 또한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서 업체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 원산지 규정 개념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원산지 기준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적용 목적에 따라서 특혜관세 적용 여부와 관계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관세 적용 이외의 목적에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특혜원산지규정은 일방 또는 쌍방 간에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방적인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가 대표적인 예이다. 쌍방 간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로는 FTA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위하여 상품의 원산지 식별을 위해 적용되는데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원산지표시, 상계관세 등의 조치와 제소대상 상품이 국내에 있는지 등을 판정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다.

26) 본 절의 내용은 정재호 외(2015), pp. 9~29의 내용을 요약 재작성하였다.

나.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

우리나라는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혜 원산지는 체결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FTA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한·칠레 FTA 등을 포함하여 다수 FTA에 따른 FTA 특혜관세기에 속한다. 일반특혜를 적용하는 국제적인 무역협정으로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UNCTAD 개도국 간 협정(GSTP),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등이 있다.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WTO 통일원산지규정이 있다.

특혜 원산지 관련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으로는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FTA 관세특례법」은 개별 FTA 내용과 함께 일반적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원산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원산지 규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거래와 관련된 원산지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특혜 원산지로는 「대외무역법」을 비롯하여 <표 Ⅲ-19>에서 보듯이 다수의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수산물 관련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규정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예방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은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표 III-19〉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 체계

		국제법	국내법
특혜 분야	FTA 특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반 특혜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WTO 개도국간 협정(TNDC) - UNCTAD 개도국간 협정(GSTP)	- 관세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비특혜분야	WTO 통일원산지규정	- 대외무역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축산물가공처리법 - 가축전염예방법 - 식품위생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특혜/비특혜	WCO 개정교도협약(부속서 K)	- 대외무역법 - 관세법	

자료: 정재호 외(2015), p. 16.

우리나라 원산지 관련 법령 중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FTA 관세특례법」의 수출물품 원산지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집행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비특혜 원산지와 관련된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며, 남북간의 물품 교역에 대한 사항은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표 III-20〉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주요 법령

주관 부처	법령	주무부서	행정규칙
기획재정부	-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관세청 특수통관과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관세법 제76조)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관세법 제229조 제3항)		
- FTA 관세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대외무역관리규정
		관세청 특수통관과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요령

자료: 정재호 외(2015), p. 18.

우리나라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주요 법령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의 법령을 비교해보면, 세 개 법령 전부 통관요건(원산지 표시), 원산지 확인(판정)기준, 원산지 사전확인/사전심사,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조사 및 처벌 등에 대해 모두 규정하고 있다.

〈표 III-21〉 통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주요내용	관세법	FTA관세특례법	대외무역법
통관요건 (원산지 표시)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3조의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①②③④
원산지 확인(판정) 기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34조(원산지 판정 등)①②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사전확인 /사전심사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4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4조(원산지 판정 등)③④⑤⑥⑦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36조(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조(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원산지 조사 및 처벌 (표시위반)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3조의2(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⑤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53조의2(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제57조(양벌규정)

자료: 정재호 외(2015), p. 20, p. 24, p. 27의 표를 이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령의 시사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또한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까지 강화된다면 FTA 활용률은 더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로 「관세법」에서는 특혜관세 규정을, 「대외무역법」에서는 비특혜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다.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규정이 있지만, FTA 협정문이 「FTA 관세특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 특혜세율인 APTA, GSTP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재호 외(2015)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일본, EU, 호주 등의 국가들은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등의 개편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관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원산지 규정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도 복잡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수출입업체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재호 외(2015)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외무역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특혜원산지제도의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세법」은 관세의 징수와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FTA 관세특례법」은 현행 FTA 특혜관세적용 수출입물품의 관세징수와 통관 및 관세행정협력 또는 FTA 특혜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에 관한 규정들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외무역법」상 FTA 이외의 특혜관세에 대한 특혜관세의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절차와 「FTA 관세특례법」의 관세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관세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⁷⁾ 그리고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규정들은 비특혜 원산지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원칙을 정하되,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제

도운영에관한고시'의 구체적인 이행규정들은 실질적인 주관부처에 따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²⁸⁾

27) 정재호 외(2015), pp. 81~82.

28) 정재호 외(2015), p. 82.

Ⅳ.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제도

직접운송원칙이란 수입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해 곧바로 해당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우선 운송 도중에 다른 국가의 물품이 혼합되어 원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FTA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입 물품이 FTA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²⁹⁾

하지만 운송도중에 제3국을 경유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에 맞게 환적 등이 이루어졌다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FTA 협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외 규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런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직접운송원칙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

가. 국제적인 논의

1) 개정교토협약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국제적인 협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우는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에서 권고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원산지 제12조에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에서는 지리적으로 항구가 없는 내륙국가가 항만을

29) 정재호 외(2013), pp. 7~8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통해 선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할 경우, 또는 보세구역과 같이 제3국 세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³⁰⁾

〈표 IV-1〉 통관법상 원산지 관련 규정

<p>Specific Annex K Chapter 1 Rules of origin</p>
<p>Direct transport rule</p>
<p>12. Recommended Practice Where provisions requiring the direct transport of goods from the country of origin are laid down, derogations therefrom should be allowed, in particular for geographical reasons (for example, in the case of landlocked countries) and in the case of goods which remain under Customs control in third countr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goods displayed at fairs or exhibitions or placed in Customs warehouses).</p>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k.aspx, (접속일: 2015.08.21)

2) WCO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 Organization)에서 언급하고 있는 직접운송 원칙에는 수출국으로 수출된 물품과 수입국에 도착한 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운송 도중에 FTA 특혜를 받을 수 없는 물품으로 바뀌거나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0) WCO, http://www.wcoomd.org/en/topics/facilitation/instrument-and-tools/conventions/pf_revised_kyoto_conv/kyoto_new/spank.aspx (접속일: 2015.08.21)

나. 국제적 제도 및 특징³¹⁾

WCO 홈페이지에서는 각 대륙별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비교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규제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WCO의 특혜원산지 규정 비교 연구(the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의 직접운송(Direct Transportation) 부분에 따르면, 직접운송 조항은 수입국으로 운송되는 재화가 수출국에서 적재된 물품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며, 이는 FTA에 해당하는 재화와 다른 재화를 이는 실질적으로는 운송 중 특혜남용과 우회덤핑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요청사항이라는 의미이다.

직접운송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직접운송만 인정하지만, 일부 원산지 모델에서는 주로 지리적 요인 또는 위급한 사태로 인한 간접운송 또는 제3국을 통해 운송된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게는 유럽-지중해(Europe-Med), 북미(NAFTA), 아세안(ASEAN) 대륙별로 나눌 수 있다. 유럽 모델은 다른 두 대륙에 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NAFTA와 ASEAN 모델은 엄격한 직접운송의 원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유무역구역 내의 체약국에서 다른 구역으로의 이동을 포함하여, 관세청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제3국의 환적(transshipment)과 경유(stop-over)도 원산지특혜가 가능하다. NAFTA와 ASEAN 모델은 제3국을 경유하는 운송에 대한 관세청 감독을 암묵적으로만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원산지 특혜 조항은 수입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rrangement)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각 대륙별 특혜무역협정이 운송과 관련해서 각기 다른 특혜 무역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리적 특징으로 설명된다. 유럽은 EU 회원국과 비회

31) 본 절은 정재호 외(2013), pp. 7~21과 WCO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tsp.aspx?p=1> (접속일: 2015.08.21)

원국가들이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다보니 별도의 직접운송 규정이 필요하지만, 미국 등에서는 무역국들이 단순하므로 비계약 주체를 통한 간접운송의 제외가 어렵지 않은 편이다.

1) 유럽모델³²⁾

유럽의 원산지 모델 내 제13조는 계약 주체간의 원산지 제조물품의 직접운송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럽-지중해권 내 기타 국가의 영역을 경유한 운송도 승인하고 있다.

비계약국을 통한 운송 외에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제3국에서의 재선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공정과 운송에 필요한 공정 등은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또한 “직접운송의 원칙” 조항에 있는 유럽의 모델은 기타 증거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환적에 대한 화물의 승인을 포함하는 단일(single) 운송 서류, 즉 비조작 증명서 등을 통해 직접운송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 영역 내 운송은 a) 이웃 국가들 사이 직접운송, b) 역내 두 국가 사이의 간접운송, c) 역내 두 국가간에 역외국가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운송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두 경우에 경우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 오류의 가능성이 적으나, 역외국가에서의 경유가 있을 경우, 환적에 대한 운송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환적과 관련해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 당해 국가의 관세당국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EU 영역 내 운송은 a) 이웃 국가들 사이 직접운송, b) EU 영역내 국가 사이의 간접운송, c) EU 영역내 국가간 역외국가를 경유한 운송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두 경우에 경우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 오류의 가능성이 적으나, 역외국가에서의 경유가 있을 경우, 환적

32)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agreements/agreement-topics/tsp-eur.aspx> (접수일: 2015.08.24)

에 대한 운송서류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환적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재선적, 물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가공이 감독하에 이루어졌다는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입증은 필요하다.

[그림 IV-1] 직접운송의 경우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agreements/agreement-topics/tsp-eur.aspx> (접수일: 2015.08.24)

〈표 IV-2〉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유럽 규정

European Model for “Direct Transport” (Article 12 Principle of territoriality)
<p>1. Except as provided for in Article 2(1) (c), Articles 3 and 4 and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e conditions for acquiring originating status set out in Title II must be fulfilled without interruption in the Contracting Parties.</p> <p>2. Except as provided for in Articles 3 and 4, where originating goods exported from an EFTA State or Morocco to another country return, they must be considered as non-originating,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ustoms authorities that:</p> <p>(a) the returning goods are the same as those exported; and</p> <p>(b) they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beyond that necessary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while in that country or while being exported.</p> <p>∴ Derogation of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p> <p>Article13 Direct transport</p> <p>1. The preferential treatment provided for under the Agreement applies only to product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Protocol, which are transpor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or through the territories of the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referred to in Articles 3 and 4 with which cumulation is applicable. However, products constituting one single consignment may be transported through other territories with, should the occasion arise, trans-shipment or temporary warehousing in such territories, provided that they remain under the surveillance of the customs authorities in the country of transit or warehousing and do not undergo operation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peration designed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 Originating products may be transported by pipeline across territory other than that of he Parties.</p> <p>∴ Evidence that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1 have been fulfilled ∴</p>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tsp.aspx> (접속일: 2015.08.24)

2) NAFTA 모델³³⁾

NAFTA의 경우 Article 411 환적(Transshipment) 조항에 계약당사국 이외

33)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agreements/agreement-topics/tsp-nafta.aspx> (접속일: 2015.08.21)

의 영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계약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작업을 제한하고 있다.

원산지 요건은 계약국의 영역에서의 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유럽의 “영역원칙”과 유사하다. NAFTA는 엄격한 직접운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Article 411은 Article 401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을 거친 물품은 역외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물품의 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외국가를 경유하는 운송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Article 411’은 ‘영역요건’으로 계약국외에서의 생산과 공정을 제한하여 계약국을 원산지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표 IV-3〉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NAFTA 규정

NAFTA Model for “Trans-shipment” (Article 411 Transshipment)
A good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n originating good by reason of having undergone production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401 if, subsequent to that production, the good undergoes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or to transport the good to the territory of a Party.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tsp.aspx> (접속일: 2015.08.24)

3) ASEAN 모델³⁴⁾

ASEAN 원산지 모델은 ‘Article 32’상의 회원국 사이에 직접 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화물이 제3국 또는 비회원국에서 운송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직접운송을 인정하고 있다.

a) 통과수속은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b) 화물은 환적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지역으로 유입되어서는

34)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agreements/agreement-topics/tsp-atiga-e.aspx> (접속일: 2015.08.21)

안 되며 c) 하역, 재선적, 물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공정 외에 다른 공정은 제한하고 있다.

역외국을 경유하는 운송의 경우 'Rule 21 of Annex 8'에 의한다. a) 수출국에서 발생한 선하증권 b)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c)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 d) 32항(2)(b) 조건을 만족시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표 IV-4〉 원산지 직접운송원칙 ASEAN 규정

ASEAN Model for "Direct Consignment" (Article 32 Direct Consignment)
<p>1.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applied to goods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and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p> <p>2.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consigned directly from the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p> <p>(a) goods transported from an exporting Member State to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p> <p>(b) goods transported through one or more Member States, other than the exporting Member State and the importing Member State, or through a non-Member State, provided that:</p> <p>(i) the transit entry is justified for geographical reason or by consideration related exclusively to transport requirements;</p> <p>(ii) the goods have not entered into trade or consumption there; and</p> <p>(iii) the goods have not undergone any operation there other than unloading and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to preserve them in good condition.</p>

자료: WCO, <http://www.wcoomd.org/en/topics/origin/instrument-and-tools/comparative-study-on-preferential-rules-of-origin/specific-topics/study-topics/tsp.aspx> (접속일: 2015.08.21)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가. 우리나라의 제도

1) 「FTA 관세특례법」

우리나라는 직접운송원칙 규정과 통과 및 환적규정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었더라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FTA 체약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 할 경우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3국의 세관 당국의 통제 아래 환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경우에만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FTA 특례고시」 제3-5-1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FTA 체약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이를 단순 경유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일시 장치되었다면,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협정별로 제3국을 경유할 때 이에 대한 입증서류 요건을 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제3국 세관의 통제를 규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FTA 협정별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FTA 관세특례법」이 적용된다.

〈표 IV-5〉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11612,20130101\)](http://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11612,20130101)) (접속일: 2015.09.16)

〈표 IV-6〉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우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선적·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 또는 지역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00481,20150518\)](http://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00481,20150518)) (접속일: 2015.09.16)

〈표 IV-7〉 FTA 특례고시

〈제3-5-1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 ① 세관장은 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 ② 세관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나라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감안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스위스연방)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 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③ 세관장은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인정한다.
- ④ 서류의 제출 절차는 규칙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다.

자료: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law/rule/RuleUserDetail.do?layoutMenuNo=20215&admRul=2&admRulSeq=3537> (접속일: 2015.09.16)

2) FTA상 직접운송원칙

현재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한 FTA는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이다. 이 중에서 원산지 기관발급방식을 이용하는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에서는 환적 경유국에서의 거래 및 소비와 연관된 활동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자율증명 발급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의 경우도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탁송화물(consignment)에 대한 작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한·칠레 FTA, 한·미 FTA의 경우 앞의 FTA 체결국과 달리 직접운송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통과 및 환적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표 IV-8〉 우리나라 FTA 협정별 비교

구 분	FTA별 직접운송원칙
한·싱가포르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직접운송 규정 - 제3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한·싱가포르 FTA 제외)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	직접운송 규정 - 탁송화물에 대한 작업 제한
한·칠레 FTA 한·미 FTA	통과 및 환적 규정 - 직접운송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음

자료: 정재호 외(2013), p. 91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가)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는 FTA

현재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FTA 중에서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에서는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ASEAN FTA에서는 경유 운송을 할 경우 지리적 또는 운송상 사유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유 운송에 대한 사유서를 추가하여 다른 FTA 보다 직접운송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EFTA FTA에서는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경유국 세관당국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의 경우도 직접운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유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해 일정한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에서는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탁송화물의 분리나 상품의 보존 작업 공정도 직접운송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한·EFTA FTA에서는 탁송화물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EU FTA와 한·터키 FTA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일 탁송화물인 경우에는 제3국 경유가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일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표 IV-9〉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는 FTA 비교

구분	직접/경유운송	경유국 세관당국 감독	경유국 공정 제한	추가 규정	경유국 공정 허용 범위
싱가포르	○	○	○	-	-
	-	-	· 제한공정 입증 서류 제출의무 (수입자, 비당사국)		
아세안	○	×	○	·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	-
	· 지리적 또는 운송상 사유로 제한한다는 문구 명시 · 경유운송 입증 서류 명시	-	-		
인도	○	○	○	·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	-
	· 경유운송 입증 서류 명시	· 입증서류 제출 의무	-		
페루	○	○	○	· 경유국에서의 거래 또는 소비 금지	-
	· 경유운송 입증 서류 명시	· 입증서류 제출 의무	· 보관의 경우,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서류 제출		
EFTA	○	○	○	-	· 하역, 재선적, 탁송화물의 분리 또는 상품의 보존 작업
	-	· 입증서류 제출 의무	· 제한공정 입증 서류 제출의무		
EU, 터키	○	×	○	-	·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 금지,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 작업
	· 탁송화물만 경유 허용 · 단일 운송서류	· 관세당국 발행 서류(물품 설명, 환적일자, 환적 운송수단, 경유 증명)	· 환적 또는 보관 관련 상황의 증거		

자료: 정재호 외(2013), p. 28, p. 33을 발췌하여 정리함

나)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는 FTA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은 한·칠레와 한·미국 FTA에서는 환적 또는 통과 및 환적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들 FTA에서도 경유국 세관당국

의 감독과 경유국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경우 하역, 재선적, 상품보존 작업 등에 한정하고 있다.

〈표 IV-10〉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지 않는 FTA 비교

구분	직접/경유운송	경유국 세관당국 감독	경유국 공정 제한	경유국 공정 허용 범위
미국	○	○	○	·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 작업
	-	-	-	
칠레	○	○	○	· 하역, 재선적, 상자 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물품의 보존 작 업
	· 모든 운송 경로를 나타내는 송장, 선 하증권 또는 화물 운송장	-	-	

자료: 정재호 외(2013), p. 34.

나. 주요국 제도

1) 미국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FTA 협정에 직접운송원칙 규정과 환적규정,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FTA에서는 NAFTA 모델에 근거한 통과 및 환적규정을 따르고 있고, 제3국에서의 추가 공정에 대해서는 하역, 재선적, 물품의 상태유지 작업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이스라엘 FTA와 미·요르단 FTA처럼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FTA도 있다.

〈표 IV-11〉 미국의 직접운송원칙

구 분		내 용
FTA 체결국가		이스라엘, 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바레인, 오만,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페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FTA상 규정 수록	원산지 규정	FTA 본문 단, 이스라엘, 요르단: 부속서
	직접운송원칙 규정	원산지 규정 또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장(Chapter) 단, 이스라엘, 요르단: 부속서 원산지 규정
주요 FTA 직접운송원칙		(NA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이 계약당사국 외의 영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보존 또는 운송을 위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생산을 거치거나 다른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내법상 규정	특혜원산지 법률	별도의 법령은 없음
	직접운송원칙 규정	FTA에 추가하여 입증서류, 허용 작업 범위의 예시 상세 규정(연방관세법에 각 FTA 원산지 규정을 둠)

자료: 정재호 외(2013), pp. 82~91을 발췌하여 정리함

미국이 체결한 FTA별로 직접운송원칙 적용 여부를 비교해 보면 〈표 IV-12〉와 같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서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제3국에서의 소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바레인, 모로코, 오만과의 FTA에서는 직접운송을 명시하면서 세관당국의 감독 의무는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페루, 우리나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언급 없이 경유 및 환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세관당국의 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칠레, 싱가포르, 호주와의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세관당국의 감독 의무도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체결한 FTA들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표 IV-12〉 미국의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비교

구분	직접운송원칙	세관당국 감독 제한	추가공정 제한	기타
NAFTA	× (환적)	○	○ (특정공정)	예외 품목 있음
칠레 FT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
싱가포르 FTA	× (제3국 운송)	× (입증서류)	○	-
호주 FTA	× (제3국 운송)	×	○	-
이스라엘 FTA	○	○	○	제3국에서 소비 금지
요르단 FTA	○	○ (입증서류)	○	제3국에서 소비 금지
바레인 FTA	○	× (입증서류)	○ (특정공정 명시)	-
모로코 FTA	○	× (입증서류)	○ (특정공정 명시)	-
오만 FTA	○	× (입증서류)	○ (특정공정 명시)	-
도미니카 FTA	○	○ (입증서류)	○	-
페루 TP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
한국 FT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
콜롬비아 FT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
파나마 FTA	× (경유 및 환적)	○ (입증서류)	○	-

자료: 정재호 외(2013), p. 55.

2) EU

EU에서는 Pan-Euro 특혜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EU에서는 FTA 본문이 아니라 부속서상에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EU는 제3국의 경유에 대한 세관의 감독을 포함해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IV-13〉 EU의 직접운송원칙

구 분		내 용
FTA 체결국가		멕시코, 칠레, 페루,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FTA상	원산지 규정	부속서
규정 수록	직접운송원칙 규정	부속서 원산지 규정(영역 요건)
주요 FTA 직접운송원칙		(Pan-Euro 원산지 규정) 1. FTA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만 적용됨 -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 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음 - 다만, 제3국 관세당국의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 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2. 1항의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아래의 내용을 제출하 여 제공됨 (a)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b) 수출당사자로부터 경유국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운송 서류 (c)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①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②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 박 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③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는 것
국내법상 규정	특혜원산지 법률	- EU 관세법 제27조, EU 관세법 집행규칙 제66조 내지 140조, 부속서 14부터 22에서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각국과의 협정을 통해 적용되도록 근거규정
	직접운송원칙 규정	없음

자료: 정재호 외(2013), pp. 82~91을 발췌하여 정리함

3) 중국

중국은 ASEAN 모델을 적용하면서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에 한해서만 직접 운송원칙을 적용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국 국내법상에 특혜원산지,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표 IV-14〉 중국의 직접운송원칙

구 분		내 용
FTA 체결국가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FTA상 규정 수록	원산지 규정	FTA 본문
	직접운송원칙 규정	원산지 규정
주요 FTA 직접운송원칙		(중국·파키스탄 FTA)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봄 (a) 제품이 수출상대국에서 직접 운송된 경우 (b) 제품이 제3국을 거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i) 지역적 이유나 운송상 필요로 인하여 경유하는 경우 (ii) 제품은 유통이나 소비를 이유로 유입되지 않아야 함 (iii) 제품은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국내법상 규정	특혜원산지 법률	구체적인 국내 규정이 없음
	직접운송원칙 규정	없음

자료: 정재호 외(2013), pp. 82~91을 발췌하여 정리함

4) 일본

일본의 직접운송원칙은 유럽모델로 볼 수 있다. 직접운송원칙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3국에서의 환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마찬가지로 제3국 세관당국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IV-15〉 일본의 직접운송원칙

구 분		내 용
FTA 체결국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FTA상 규정 수록	원산지 규정	FTA 본문
	직접운송원칙 규정	원산지 규정
주요 FTA 직접운송원칙		(일본·싱가포르 FTA) 다음의 경우 체약국의 원산품으로 인정 - 상대 체약국 영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경우 - 환적 또는 일시 저장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송하더라도 당해 제3국에서 환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법상 규정	특혜원산지 법률	관세잠정조치법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상 특혜를 공여하고 있음
	직접운송원칙 규정	FTA를 체결한 국가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FTA 규정을 적용

자료: 정재호 외(2013), pp. 82~91을 발췌하여 정리함

다. 주요국 특징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직접운송원칙은 크게 유럽모델, NAFTA 모델 그리고 ASEAN 모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U와 일본은 유럽모델에 가까우며 미국은 NAFTA 모델 그리고 중국은 ASEAN 모델로 분리해 볼 수 있다.

유럽모델인 EU와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고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SEAN 모델로 볼 수 있는 중국에서도 역시 EU와 일본처럼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국 경유시에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사유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FTA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NAFTA 모델을 따르고 있어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유럽모델과 ASEAN 모델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작업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한·EU FTA, 한·터키 FTA에서는 유럽모델을 그리고 한·칠레 FTA, 한·미국 FTA에서는 NAFTA 모델을 따르면서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별로 다양하게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는 특혜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국내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모두 FTA 협정문에 따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만이 별도의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3. 직접운송원칙 적용 관련 분쟁 사례

직접운송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미국보다는 EU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EU에서의 분쟁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원산지 관련 사례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직접운송과 관련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다.

가. 우리나라 관련 분쟁 사례

우리나라에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해서 과세관청과 직접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사례 1 : 인도네시아산 주석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³⁵⁾

인도네시아산 주석괴를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통과선하증권’ 서류제출 미비로 기각된 사례이다.

35)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mUser/dem/searchEngineDemViewPopup.do?semok=90&dem_no=60883&menuNm=demList (접속일: 2014.04.24)

2009년 싱가포르 내 시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인도네시아 원산지인 주석괴를 국내로 수입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향후 직접배송원칙 위배로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수입사측에서는 주석괴 생산이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 방카섬에는 우리나라 직항 노선이 없어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심판원에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수입물품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례 2 : 스페인 와인 수입 중 최초 물량반입 후 남은 물량 홍콩으로 반송 재수입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³⁶⁾

2007년 스페인 등에서 선적된 와인 등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반송했던 남은 물품의 재반입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기각한 사례이다. 2007년 7월 스페인 등에서 와인 등을 수입하였고 통관 후 남은 물량에 대해 홍콩 보세 창고에서 홍콩 물류사로 반송하였다. 그 이후 수입자는 2009년 7월 홍콩에서 선적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였고, 2012년 6월 재반입 와인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적용과 감액경정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 직접운송에 위배되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사청구 결과 운송과정에서의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위배되는 것이며 수입자의 여타 사정 등으로 타국으로 반송 수출한 것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규정인 일시 환적 또는 일시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6)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law/precedent/PrecedentUserDetail.do?layoutMenuNo=20226&class1=2&deccNo=581> (접속일: 2015.04.27)

사례 3 : 유럽에서 수입한 주류를 제3국에서 분리 배송받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³⁷⁾

유럽에서 수입한 주류에 대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했으나 조사결과 수입물품이 제3국에서 분리 배송되어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판정된 사례이다.

수입사는 유럽에서 주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신고하였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사가 아닌 계열사로 송부되어 창고에 보관 후 컨테이너 재반입 작업을 거쳐 다른 선박에 선적되어 국내로 수입되었으므로 2단계에 걸쳐 운송되었고, 다른 날짜에 다른 선박으로 송부된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했다고 하여 협정세율을 배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수입사에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상에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포장명세서에 선적국가, 경유국, 하역국 전체 운송 과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이의제기하였다.

그러나 심사결과에서는, 수입사는 유럽 주류회사에 주문하고 주류회사가 다시 기타 수출자에게 주문함에 따라 송품장과 포장명세서가 2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으며, 수출자는 주류를 타국 수출물품을 함께 선적하여 컨테이너에서 적출했다는 점, 수출자를 달리하여 2단계에 걸쳐 서류가 발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는 단일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7)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law/precedent/PrecedentUserDetail.do?layoutMenuNo=20225&class1=1¤tPageNo=1&searchCondition=evtNm&searchKeyword=FTA&startDate1=&endDate1=&startDate2=&endDate2=&deccNo=699> (접속일: 2015.04.27)

사례 4 :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가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한 경우, AP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³⁸⁾

2013년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가 홍콩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수입한 경우로서, APTA 관세 혜택을 요청하였으나 중국과 홍콩 간 직접운송 증거 불충분으로 적용 배제된 사례이다.

홍콩을 경유해 수입한 의류에 대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및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수입사가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세관장이 관세적용을 배제하겠다고 과세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사가 부당하다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사례이다.

수입사에서는 통과선하증권 등 네 가지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의 APTA 원산지 규칙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APTA 원산지 검증절차에 위배되는 시행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7년 APTA 원산지 검증절차 제9조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경우, (1)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2) 수출국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3) 상업송장 원본, (4) 기타 보충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지세관장은 2010년 2월 23일 홍콩 경유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청단' 등 서류를 통해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관세사회에 통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지만, 이는 참고사항에 간략하게 기재한 내용으로 청단의 서류제출이 곧바로 과세요건 사실 등을 인정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서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38) 관세청 법령정보: 적부심사 제2013-59호,

<http://www.customs.go.kr/kcshome/law/precedent/PrecedentUserDetail.do?layoutMenuNo=20225&class1=1¤tPageNo=1&searchCondition=evtNm&searchKeyword=APTA&startDate1=&endDate1=&startDate2=&endDate2=&deccNo=617> (접속일: 2015년 10월 26일)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미국에서의 관련 분쟁 사례

미국의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FTA 특혜세율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분쟁 사례보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분쟁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FTA는 최근에 체결되기 시작하였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세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관련

가) 보세구역 외 물품 보관

사례 1 :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섬유: 캐나다 수입사 창고 보관 후 미국 수입 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H064377)³⁹⁾

2009년 캐나다 면세 프로그램(Canadian Duties Relief Program)이 적용되는 Interwrap Papers Ltd가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캐나다에 수입하고 미국으로 재수출하면서 인도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율 적용을 요청했으나 보세구역 외 물품보관으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된 사례이다.

쟁점 물품의 경우 인도에서 생산되어 캐나다 면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수입사의 창고에서 보관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수입사는 창고 보관 시 다른 공정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개발도상국 특혜 관세율 적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캐나다로 수입된 섬유는 보세구역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수입사의 창고에 보관되었으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39) <http://rulings.cbp.gov/index.asp?ru=h064377&qu=directly+imported&vw=detail> (접속일: 2015.05.21)

**사례 2 : 짐바브웨산 화강암 블록: 짐바브웨에서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HQ 557937)⁴⁰⁾**

1994년 아프리카 짐바브웨산 화강암 블록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트럭을 통해 항구에서 보세구역 외 회사의 창고로 운송해 보관하다 미국으로 운송한 경우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이 요청되는지 문의했으나 보세구역 외 물품보관으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된 사례이다.

미국 수입사는 쟁점물품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캐나다를 거쳐 수입하고자 하였다. 미국 수입사는 캐나다 몬트리올 항구에 도착한 물품을 트럭을 통해 퀘벡에 위치한 회사의 창고로 이송하였으며, 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전 창고에서 보관하였을 뿐 다른 공정과정은 거치지 않았으며 특혜관세를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최종 목적지가 미국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캐나다 창고 역시 보세구역이 아니었으므로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어 요청이 기각되었다.

나) 최종 목적지가 수입국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우크라이나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네덜란드에서 환적한 후 미
국 수입 시 특혜관세 협정세를 적용 여부(HQ 562112)⁴¹⁾**

2001년 오스트리아 무역사로부터 우크라이나산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수입하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보세창고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운송된 경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을 요청했으나 최종목적지가 미국이 아니므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된 사례이다.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티타늄 공장은 오스트리아 무역회사가 투자한 회사

40) <http://rulings.cbp.gov/index.asp?ru=557937&qu=HQ+557937&vw=detail> (접속일: 2015. 05. 21)

41) <http://rulings.cbp.gov/index.asp?ru=562112&qu=HQ+562112&vw=detail> (접속일: 2015. 05. 21)

로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스트리아 회사에게 주문을 해야 하며 이 주문이 우크라이나 제조공장으로 전달된다고 설명하였다. 쟁점물품은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른 물품을 함께 실은 컨테이너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네덜란드로 운송되며 로테르담 보세구역에서 각 물품별로 선별되어 다시 포장된 뒤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우크라이나산 마그네슘은 맞으나, 최종 목적지가 미국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요청을 기각하였다.

사례 4 : 인도네시아산 목재 문: 캐나다 수입된 물품의 미국 수출 시 특혜 관세 적용 여부(HQ 562466)⁴²⁾

2002년 캐나다로 수입된 목재 문의 일부 물량을 보관하다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로서, 인도네시아산 특혜관세율 적용을 요청했으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므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된 사례이다.

캐나다 수입사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 문을 수입하고 있으며 고객은 캐나다 및 미국이다. 수입한 목재의 일부는 캐나다 상업구역으로 이송하고, 나머지를 창고에 보관하다 미국 소재 수입사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이므로 이 경우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한 사례이다.

사례 5 : 태국산 자동냉각장치: 캐나다로 수입된 물품의 미국 수출 시 특혜관세 적용 여부(HQ 560435)⁴³⁾

1998년 태국산 자동냉각장치를 수입/제작하는 캐나다 회사가 수입한 물량을 개별 포장한 후 원산지 표시해서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미국에 수출한 경

42) <http://rulings.cbp.gov/index.asp?ru=562466&qu=HQ+560435&vw=detail> (접속일: 2015. 05.21)

43) <http://rulings.cbp.gov/index.asp?ru=560435&qu=HQ+560435&vw=detail> (접속일: 2015. 05.21)

우로서 특혜관세 혜택 여부를 요청했으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므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된 사례이다.

캐나다 회사는 수입한 태국산 자동냉각장치를 캐나다 보세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다른 공정과정은 거치지 않은 채 미국의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을 때마다 미국으로 운송하였다. 다만 재고관리를 위해 캐나다 보세 창고 안에서 원산지과 회사명 라벨링 작업을 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라벨링 작업은 또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자유무역구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바, 캐나다는 해당국이 아니다. 또한 창고에 보관되어 라벨링된 태국산은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운송의 원칙에서 위배되어 특혜세율 적용을 기각당했다.

다) 생산자와 수입자의 관계 불명확

사례 6 : 러시아산 캐비어: 독일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HQ 561015)⁴⁴⁾

1998년 수입사는 러시아산 캐비어를 수입해 계열사의 창고가 위치한 독일 함부르크 자유무역구역에 보관하다 주문 시 미국으로 항공운송하면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문의하였으나 생산자와 수입자가 직접운송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이다.

1998년 수입사는 러시아산 캐비어를 수입해 독일 함부르크 자유무역구역의 계열사 창고에서 보관하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항공배송하였다. 자유무역구역 내 창고에 있었으며, 물품에 대한 가공내역이 없으므로 특혜관세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생산자와 미국의 수입사 간의 운송이 아니라, 독일 계열사와 미국 본사와의 거래에 더 가까우므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되었다.

44) <http://rulings.cbp.gov/index.asp?ru=562999&qu=HRL+559621&vw=detail> (접속일: 2015. 05. 21)

**사례 7 : 러시아산 마그네슘: 사이프러스 중개회사를 통해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한 물품의 특혜관세를 적용 여부(HQ 559621)⁴⁵⁾**

1997년 미국의 수입사는 러시아산 마그네슘을 수입하기 위해 사이프러스 무역회사에서 주문하여 네덜란드 보세창고를 거쳐 미국으로 운송된 마그네슘에 대한 특혜관세 요청했으나, 관할지역 관세청에서 기각당해 재소하였다. 그러나 사이프러스 무역회사가 독립적인 무역사로서 러시아 마그네슘 수출사의 대리인 관계가 아니므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관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된 사례이다.

JBA Metals International사는 사이프러스의 Alpro Product사를 통해 러시아 마그네슘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보세구역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그네슘을 미국 볼티모어로 운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될만한 보세구역 이탈, 가공공정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네덜란드 보세창고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물품은 생산자와 수입업자 간의 매매가 아니라 독립적인 중개 회사와 수입업자와의 매매로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관할 세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요청을 기각하였다.

**사례 8 : 러시아산 페로크롬 : 자회사가 모회사를 통해 러시아산 페로크롬
을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특
혜관세를 적용 여부(HQ 559705)⁴⁶⁾**

1997년, 미국 Minerais사는 미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모회사에서 러시아산 페로크롬을 주문해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 미국으로 운송하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를 적용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해 재소하였으나, 결정에 번복이

45) <http://rulings.cbp.gov/index.asp?ru=559621&qu=HQ+559621&vw=detail> (접속일: 2015. 05. 21)

46) <http://rulings.cbp.gov/index.asp?ru=559705&qu=HQ+559705&vw=detail> (접속일: 2015. 05. 21)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Minerais U.S Inc사는 러시아산 페로크롬 수입을 위해 러시아 페로크롬을 구입하고 있는 모회사에게 주문하고, 모회사는 주문을 받아 네덜란드 로테르담 창고에 있던 페로크롬을 벨기에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운송하였다. Minerais사는 물품이 단지 중간 경유했으므로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가 네덜란드의 보세창고가 아니며,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매매가 아니라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판매로 보고 직접운송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관할 관세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요청을 기각하였다.

라) 서류미비

사례 9 : 네팔산 귀금속: 운송 시설 미비로 인도를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HQ 562999)⁴⁷⁾

2004년 네팔산 귀금속을 인도 육로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FTA 협정세율을 받고자 세관에 문의하였으나 ‘직접운송의 원칙’에 벗어나 기각된 사례이다.

수입사는 네팔산 귀금속을 미국으로 수입하며 차량으로 인도를 경유해 미국에 수입하며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을 요청하였다. 수입사는 네팔에서 적합한 운송회사를 찾을 수 없어 차량을 이용해 인도로 이동해 인도에서 미국으로 해상운송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네팔은 개발도상국 특혜관세율 적용 국가이나, 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경우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네팔에서 미국까지 직접운송을 담당할 수 있는 운송회사가 네팔에도 있었다는 점, 운송과정에서 인도의 상업구역에서 물품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47) <http://rulings.cbp.gov/index.asp?ru=562999&qu=HQ+562999&vw=detail> (접속일: 2015. 05.21)

인정해 특혜관세율적용 요청을 기각하였다.

사례 10 : 러시아산 메탄올과 메틸알코올: 항만시설 미비로 핀란드 육로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입할 때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HQ 557933)⁴⁸⁾

1994년 수입사는 러시아로부터 메탄올과 메틸알코올을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였으나 러시아에는 메탄올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과 시설이 없어 육로로 핀란드로 운송한 후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운송하면서 특혜관세를 요청하였다. 이 경우 직접운송의 원칙에 해당하기는 하나 물품이 핀란드 관세청 관리 아래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이다.

수입사는 러시아로부터 메탄올 또는 메틸알코올을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에는 메탄올을 해상운송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 항구가 없어 부득이 육로(철도)를 이용해 시설을 갖춘 항구로 이동해 이송을 해야 했다. 이런 시설은 유럽 내 핀란드,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의 국가에서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수입사는 그중 핀란드에서 미국으로 운송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핀란드 상업구역으로 가지 않으며, 최종 목적지는 미국으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세관에서는 이런 운송경로라면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다만 물품이 세관 관리 아래에 있었다는 증명서류와 최종 목적지가 미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세율적용 요청이 기각되었다.

48) <http://rulings.cbp.gov/index.asp?ru=559535&qu=HQ+557933&vw=detail> (접속일: 2015. 05.21)

2) 자유무역협정 관련

가) 환적 시 재포장 후 운송

사례 11 : 과테말라산 설탕의 멕시코 환적 소포장 후 미국 수입 시 협정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H259036)⁴⁹⁾

2014년 수입사는 과테말라산 설탕을 멕시코 관세청 산하 단기 재수출프로그램을 활용, 멕시코로 운송해 소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 세율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환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사례이다.

수입사는 과테말라산 설탕을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멕시코 관세청 산하 미국 단기 재수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멕시코로 운송하였다. 분쟁물품을 재가공하지 않고 50파운드 소량 포장하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운송했다고 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품의 판매를 위한 공정이었으므로 미국 세관에서는 협정 세율 적용을 기각하였다.

사례 12 : 칠레산 양가죽 의류 캐나다 환적 시 세탁, 재포장 상품의 미국 수입 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HQ 563304)⁵⁰⁾

2006년 수입사는 칠레산 양가죽을 캐나다로 운송한 다음 진공세탁, 다림질 이후 개별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면서 칠레·미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포장의 목적이 환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한 사례이다.

49) <http://rulings.cbp.gov/index.asp?ru=h259036&qu=Transshipment&vw=detail>(접속일: 2015.05.21)

50) <http://rulings.cbp.gov/index.asp?ru=h259036&qu=Transshipment&vw=detail>(접속일: 2015.05.21)

CBP's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NCSD)에서는 환적 시 가공은 제품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환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세율적용을 기각(NY L84820)하였으나, 수입사는 진공청소기를 활용한 청소, 다림질, 개별포장은 양가죽의 질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분쟁물품의 세탁, 다림질, 개별포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고 관할관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며 협정세율 적용을 기각하였다.

3) 시사점

직접운송 관련 우리나라 분쟁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원산지 분쟁에서 언급하였듯이, 관련 서류 준비 등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의류를 수입하는 많은 업체들의 경우 직접운송을 증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상황이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는 미리 중국 및 홍콩과 협의하여 업체들이 직접운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개발도상국 관련 특혜세율 적용과 연관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위반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세관 통제 아래 물품이 보관되지 않는다거나, 최종 목적지를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자와 수입자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서류미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운송 도중에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들이었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미국 세관이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직접운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직접운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직접운송원칙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로 비변경원칙(non alteration rule/non manipulation rule)이 있다. 직접운송원칙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체약국에서 수출한 수출품과 수입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주자는 의견이다. 물류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엄격한 직접운송원칙 적용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관세 이외에 법인세 등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또 다른 조세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아직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4. 환적화물 통관에 대한 논의

가. 우리나라 환적화물 제도 현황

우리나라 「관세법」 제2조에서는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¹⁾ 다시 말해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등에 도착한 이후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운송수단을 바꿔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를 환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일시 체류한 물품이 부산항을 통해 반출되기도 하지만 인천항을 통해 반입된 물품이 국내 보세운송 과정을 거쳐 부산항을 통해 반출되기도 한다. 이를 「관세법」에서는 환적과 복합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 기준으로 총 2만 4,798건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

5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5.03.21)

적 중에서 환적 화물이 총 9,429건으로, 전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전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중에서 환적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적 화물 처리가 부산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도 <표 IV-16>과 <표 IV-17>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IV-16〉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

(단위: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입	11,254	11,605	10,369	12,349	13,413	13,662	13,948	14,601
환적	6,155	6,186	5,719	6,641	7,719	8,498	9,321	9,990
(부산항 환적)	5,811	5,808	5,372	6,276	7,353	8,148	8,748	9,429
연안화물	135	135	253	378	478	390	200	207
총계	17,544	17,927	16,341	19,369	21,611	22,550	23,469	24,798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67

(접속일: 2015.10.07)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표 IV-17〉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비중)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입	64.1	64.7	63.5	63.8	62.1	60.6	59.4	58.9
환적	35.1	34.5	35.0	34.3	35.7	37.7	39.7	40.3
(부산항)	33.1	32.4	32.9	32.4	34.0	36.1	37.3	38.0
연안화물	0.8	0.8	1.5	2.0	2.2	1.7	0.9	0.8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산항 이용비중	94.4	93.9	93.9	94.5	95.3	95.9	93.9	94.4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67

(접속일: 2015.10.07)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

다. 그 결과 막대한 물량의 환적화물이 부산항을 거쳐 나가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 감독을 간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환적화물의 특징상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일시 체류하여 거쳐 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타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산(중국산) 섬유류의 불법 환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섬유류에 대한 수입국의 검사비용이 높아져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미국, EU 등에서도 중국산 섬유류가 우리나라에서 불법 환적 되어 수출됨으로써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물품이 반입된 이후 국내 내륙 보세 운송을 통해 부산항으로 반출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에서 우리나라산으로 바뀌치기 되어 미국, EU 등에 수출될 때 불법적으로 한·미 또는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⁵²⁾.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국내로의 반출입 신고, 컨테이너 적출입 신고, 또는 국내 운송 과정에서의 보세운송 신고 등이 생략됨으로써 이들 환적화물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았고 이러한 빈틈을 노리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 환적과 직접운송원칙의 조화

그동안 환적화물은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물품이었기에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의심과 이에 따른 세관검사 비율이 높아진다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바 FTA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2) 김중환(2008), pp. 63~87.

원산지 문제와 직접운송원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을 위한 환적신고, 환적화물의 반출입 신고를 의무화하여 세관에서 환적화물에 대해 일정 부분 관리를 시작하였다.⁵³⁾

한편 원산지를 강조하는 FTA 체제에서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가 중요하지만, 환적화물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고 우리나라 영역 밖에 있는 물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법적인 권한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로 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우리나라 영역 밖에 있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 권한 등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제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환적화물 조사를 강화할 경우에는 물류비용 및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감안해보면 더욱 국제적인 논의가 중요하다.

5. 기타 「FTA 관세특례법」 관련 개선사항

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협정관세 적용신청

「FTA 관세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 적용신청 등) 제3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신고 시점에 협정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수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입신고 시점에서 또는 수입신고 이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았지만 FTA 신청에

53)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2013. 06. 10 (1차 개정), 2013. 12. 20 (2차 개정).

오류를 발견하고 수입자가 다시 세액을 수정/경정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이미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 후 1년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FTA 사후신청 취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표 IV-18〉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p>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p> <p>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I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5.10.06)

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제5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수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어야 한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다만,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 기간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항 도착 이후에 수출국에서 소급규정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수입항에 도착한 당일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물품은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신고 없이 장기간(예를 들어 1년 이상) 보관된 이후 수입신고하면서 FTA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소급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신청을 제한한다거나,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도 소급 발급일부터 협정관세적용 신청시점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IV-19〉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p>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p> <p>⑤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p> <p>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5.10.06)

다.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벌칙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벌칙과 관련해서 제2항에서는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경우에, 제3항에서는 “사실과 다르게”로 구분하여 제2항에서는 고의인 경우에, 그리고 제3항에서는 과실인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도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경우에는 가

산세 한도를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다른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등을 활용하여 기준 검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IV-20〉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 제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14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③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4%80%EC%84%B8%EB%B2%95#undefined> (접속일: 2015.10.06)

라.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FTA 적용 확대

보세건설장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의 기계류, 시설 등의 거대한 부분품들이 보세건설장으로 반입되고, 이러한 부분품들이 보세건설장 안에서 조립된 이후 완성품으로 수입 통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분품이 수입되어 조립된 완성품이 수입 통관되면서 이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FTA 특혜신청은 건설장 내에서 조립된 완성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 시점에 적용하지만, 우리나라 보세

건설장에 수입된 것은 부분품이며 이들 부분품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존재하지만 이를 조립한 완성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결국은 완성품에 대해서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입된 부분품들의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경우로, 수입된 부분품들에 대해 모두 동일한 FTA 상대국가로부터의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한다면, 이들 부분품을 조립한 완성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FTA 상대국가의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여 해당 FTA 상대국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된 부분품들이 여러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면, 또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분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완성품에 대해 동일한 국가의 원산지를 적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완성품에 대해 1개의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FTA 특혜세율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해 1개의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원료과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세공장에서는 최종재와 원재료 중에서 선택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최종재와 원재료 사이에 관세율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세건설장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완성품과 부분품의 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세건설장에서도 완성품 또는 부분품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보세건설장에서도 보세공장처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 추진하였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양자 통상정책보다는 WTO에 기반을 둔 다자 통상정책에 무게를 두고 다른 국가들이 1990년대 말부터 FTA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4년 칠레와 FTA 체결한 이후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정책을 통해 미국, EU, 중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TA라는 큰 장터가 마련되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앞서 논의되었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FTA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될 수는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제도를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인 원산지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하였다. FTA는 해당 FTA 체결국에 한정해서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기에 FTA 체결국인지를 확인하는 원산지 적용이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원산지 자체에 변화가 없었다는 증명인 직접운송원칙을 함께 논의하였다.

FTA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문제는 수출입업체, 세관당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FTA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충족할 경우에만 FTA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복잡한 원산지 기준과 함께 또한 FTA 체결국 사이에 원산

지 검증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건수도 2008년 23건에서 2014년 2,8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EU로부터의 원산지 검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검증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전기 및 전자제품, 기계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등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따라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2008년 293건에서 2014년 3,323건으로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원산지 기준도 복잡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증가하는 것 또한 분명 수출 입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3년 동안의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한·미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특혜세율과 일반세율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FTA 제도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자료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원산지 규정 엄격성과 FTA 활용도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한·미 FTA 자료를 바탕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서 원산지 기준이 FTA 활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또한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까지 강화된다면 FTA 활용률은 더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산재해서 제시하고 있다. 정재호 외(2015)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일본, EU, 호주 등의 국가들은 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모두 「관세법」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 등의 개편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관세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대외무역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한 원산지 규정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도 복잡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수출입업체의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원산지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규정이 실제 FTA 활용에 있어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원산지 검증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들이 있다. 이 경우에는 현행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세당국과 수출입업자의 FTA 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됨에 따라 분쟁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원산지 검증이 요청되는 사유 중에서 서류 등 형식적인 요건이 전체 검증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과 같은 실질적인 요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8%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수출검증 결과 실질적으로 원산지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약 37%이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유형의 절반인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원산지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더 많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형식적·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특혜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의 실질적인 요건보다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 검증 기준 자체가 분쟁을 촉발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인 FTA에서는 수출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피해가 수입업자에게 귀속된다. 또는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과 관련된 분쟁도 있다. 원산지 회신 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단기적으로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령, 스위스

금과 사례에서와 같이 상대국에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 원산지 검증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기한을 회신 기한에서 제외하는 식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대국 관세당국의 기한 내 미답변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현행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불가피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의 예외 적용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현행 원산지 검증 규정의 복잡성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FTA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검증 절차에 대한 유연한 해석 및 현행 규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순성을 가진 FTA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직접운송과 관련된 분쟁은 원산지 문제보다는 좀 덜 복잡한 것으로 보였다. 원산지 관련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서류 미비 등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우선적으로 눈에 띄었다. 세관 통제 아래 물품이 보관되지 않는다면, 최종 목적지를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생산자와 수입자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서류미비 등이 있었다. 미국의 사례들에서는 미국 세관이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직접운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와 같이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에서, 출발지를 정하지 않고 출항한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적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선 미국처럼 직접운송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들의 물류비 절감 등이 그 이유이기에 현지 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는 「FTA 관세특례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FTA 관세특례법」을 제정하고 「관세법」 내용을 수정하면서 FTA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들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FTA라는 새로운 제도가 운용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1년 이내에 FTA 특혜세율의 사후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신청 오류로 다시 세액을 수정/경정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소급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신청을 제한하거나, 소급 발급일부터 협정관세적용 신청시점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벌칙 관련해서 고의인 경우와 과실인 경우에 대해 차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데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세건설장이라는 특징을 가진 보세구역에 대해서는 완성품 또는 부분품별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공장처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FTA를 체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효과 분석 등 FTA로 인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혜택이 발생할지를 가늠해본다. 그리고 상대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위해 끝없이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FTA를 통해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기회를 얻고자 함이다. 이제 다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제적 효과 분

석을 하면서 가정하였던 조건들을 채우고 있는지, 협상을 하면서 노력했던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 FTA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효과가 추정 당시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예측한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FTA 관련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FTA를 체결할 때 기대했던 혜택 이상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7.
- 관세청, 『관세연감』, 2015.
- _____, 「섬유직물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검증 간담회 발표자료」, 2015. 04. 30.
- _____, 『FTA 꼭 알려주고 싶은 통관애로 해소 사례 100』, 2015.
- 김영귀·김민성·김종혁·고희채·이철원·오탈현·유새별,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해외국가들의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용역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김중환, 「환적화물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 『해양비즈니스』, 제11호,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008, pp. 63~87.
- 김한성·조미진,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KIEP working paper 1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방호경,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정책자료 제 4-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2014.
- 장근호, 「FTA 특혜 원산지 검증제도 :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pp. 233~266.
- 정재완,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 pp. 61~78.
- 정재호·김미영·김수영·양지영, 『관세 채권 확보와 수입자 보호 제도에 관

- 한 검토』, 관세연구, 제12-0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정재호·김정아·김미영,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상의 직접운송원칙 조사』, 관세연구 13-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정재호·김미영·홍현표,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관세연구 15-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최흥석·이영달, 『FTA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관세무역개발원, 2011.
- 채형복, 『국제원산지제도』, 높이깊이, 2011.
- 최승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 - 위생검역, 보건, 의약품,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4, pp. 145~169.
- 한상현,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pp. 207~232.

Carrere, Céline, and Jaime de Melo,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 Equally Costly? Estimates from NAFTA,” In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91~212.

Estevadeordal, Antoni,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NAFTA,” *Journal of World Trade*, 34, 2000, pp. 141~200.

Estevadeordal, Antoni, Jeremy Harris, and Kati Suominen, “Multilateralis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9.

Estevadeordal, Antoni, and Kati Suominen,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4.

_____, “Gatekeepers of Global Commerce - Rules of Origin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웹사이트〉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관세청, 「원산지 검증동향」, 2015-1호, 2015.07.10.

http://www.customs.go.kr/kcshome/cmm/fms/FileDown.do;jsessionid=RT9kVJZLkbLG0g8JVtBr5R3ChLTFbVVrSDyMGY3p7QZGLWJpqQy7!-246735781?atchFileId=FILE_000000000358477&fileSn=0.

조세심판원, <https://www.tt.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ecos.bok.or.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 포털, <http://www.custra.com>.

한·EU FTA 협정서,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

한·미 FTA 협정서,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main/>.

Customs Boarder Protection(CBP), <http://rulings.cbp.gov>.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tp://www.usitc.gov/>.

Export.gov, U.S. Free Trade Agreements.” <http://www.export.gov/FTA/index.asp>.

European Union 홈페이지, “FTA협정문”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agreements>.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http://www.imf.org>.

_____, “Country Composition of WEO Groups,”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1/weodata/groups.htm#oem>.

P.K. “Apple and Samsung’s Symbiotic relationship: Slicing an Apple,” *The Economists*, 2011.08.10.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8/apple-and-symbiotic-relationship>.

World Customs Organization(WCO), <http://www.wcoomd.org>.

〈관련 자료 목록〉

김영귀·김혁왕·엄준현·김도희, 『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오
늘의 세계경제 제15-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국제원산지 정보원, <http://www.origin.or.kr>.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정재호 · 신상화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추진을 통해 EU와 미국 등과 같은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할 당시에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정도가 중요하였지만, 이제는 체결된 다수의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제도를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항목인 원산지와의 이러한 원산지 자체에 변화가 없었다는 증명인 직접운송원칙을 함께 논의하였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FTA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고, 원산지 검증 또한 급증하고 있어 수출입업체, 세관당국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으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한·미 FTA 활용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예상한 대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할수록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까지 강화된다면 FTA 활용률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함께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

법」,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에서 각각 원산지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의 복잡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및 직접운송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FTA 관세특례법」과 관련되어 FTA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A Study of Customs Administration Systems for Higher FTA Utilization in Korea

Jaeho Cheung, Sangwha Shin

In 2004, the Korea-Chile FTA came into effect as the first of its kind, followed by the FTAs with larger economies including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In early stage of proceeding FTAs, it was important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 of FTAs, but now it is time to focus on how well we can utilize FTAs which were made.

This study analyzes rules of origin(RoO) including direct transportation, which are the two most crucial sections to precede FTAs. In order to apply preferential rate, the verification of origin is essential, but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to industries and governments to comply with requirements as each FTA has applies different criteria for origin verification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restrictive RoO affect the utilization rate of Korea-US FTA, which is measure as the ratio between the FTA import and the total import of each item. We find that relatively lower preferential rate (compared to non-preferential rate) encourages utilization of FTA and the utilization level is affected by the restrictiveness of RoO. The analysis shows that items with unrestrictive RoO are utilizing the FTA

more compared to items with restrictive RoO. This result means that the restrictive RoO discourage utilization of the FTA.

We also discuss about the current Korean law system related to FTAs, in which RoO was described separately in three different laws: the law of Customs, the law of External trade, and the law of FTA special customs. The current law system may cause unnecessary redundancies and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In addition, this study makes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scheme of RoO and direct transportation based on case studies of conflicts with foreign countries. It also touches upon several issues which can arise when the government implement the scheme and discuss about the improvements on the scheme.

■ 저자약력

정재호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상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조사역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안승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15-04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관세제도 정비방향

발행	2015년 12월 31일
저자	정재호·신상화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전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6,000원
조판 및 인쇄	상일인쇄 (02)2269-6770
I S B N	978-89-8191-790-6 93320
